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2021.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2021. 9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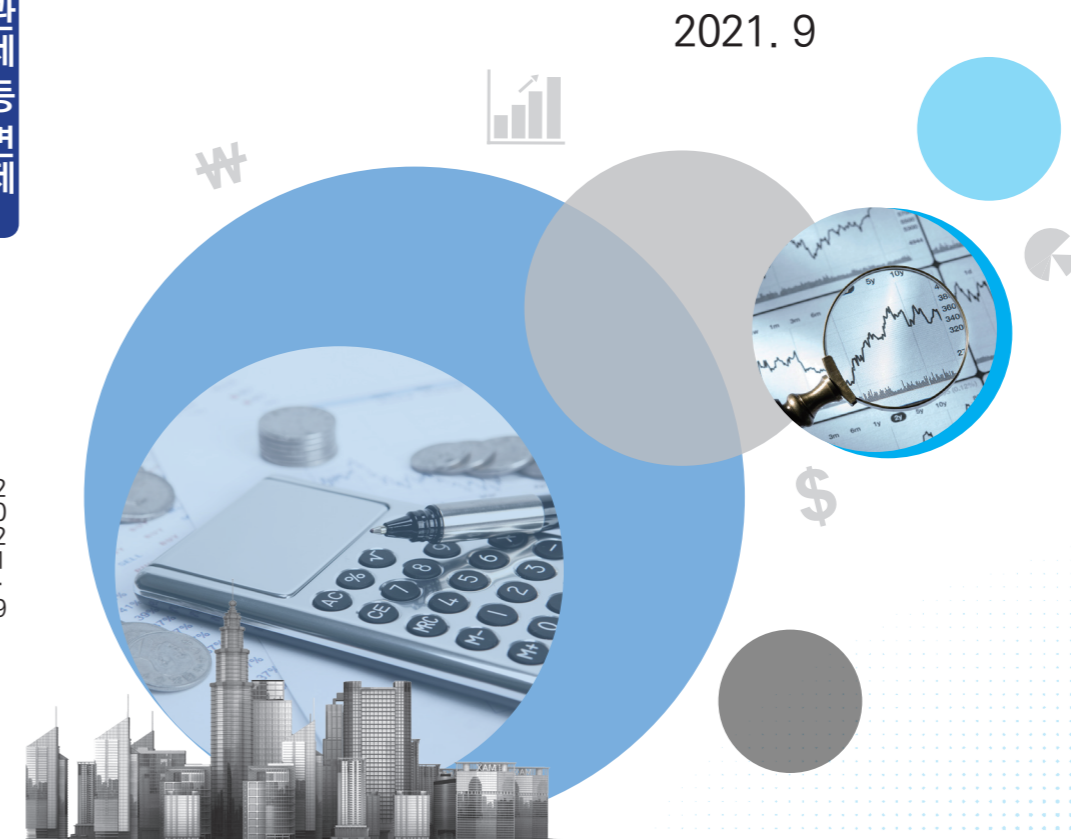
2021. 9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2021.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연구
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명환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1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요 약

1. 제도 운용 현황

- 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 의해 외국인투자(동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도임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통한 국내 경기 활성화, 외국의 선진기술 유입, 그리고 고용창출 유도임

가. 도입 목적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에 대해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의 운용 목적은 외국인의 투자 촉진을 통해 국내 경기 활성화, 외국의 선진기술 유입, 그리고 고용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함임
 - 외국인투자 유치는 국내 경기 활성화 및 선진기술 유입, 고용창출의 순기능이 있음
 - 기술이 현지의 다른 국내 법인들에 직접적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인적자본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기술이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나. 정책 대상자 및 대상 자본재

-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외국인투자지역 등 국민경제 기여도를 고려한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만족한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본재를 도입하여야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내 기존 주식 취득이나 합병 등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면제 해당 자본재는 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해당하는 출자 목적물에 해당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본재
 - 자본재의 범위는 산업시설, 또는 당해 시설의 최초 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또는 기술

다. 수혜 내용

-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 및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고도기술 수반사업 투자기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
-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만을 면제함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시행자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일반지방산업단지 중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여 지정한 지역에 입주한 기업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 새만금사업 시행자

라. 조세지출 규모

- 최근 조세지출 규모는 약 160억원 정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조세지출 규모는 2012년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약 1,010억원까지 증가하였지만,
 - 최근에는 약 160억원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표 1〉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2020 (추정)	2021 (추정)
관세	118	441	258	181	122	102	50	49
부가가치세	142	569	195	191	174	82	109	111
합계	260	1,010	453	372	296	184	159	160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0~2021.

마. 제도 연혁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1960년에 제정된 「외자도입촉진법」에 의해 시작되었음
 - 그 후 1966년에는 「외자도입법」으로 변경되어 외국인의 투자 인가에 의하여 도입된 자본재에 대한 관세 및 물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제도는 1984년 7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해서 적용 대상 기업 범위에 따라 감면율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음
 - 1984년 7월 1일부터 「외자도입법」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되던 규정을 현재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함
- 1984년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100%를 감면하였음
 - 1987년에는 감면율을 70%로 축소하였고,
 - 1991년에는 다시 감면율을 50%로 축소함

- 1995년에는 대상 사업 종류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였고, 1998년에는 감면율을 100%로 상향하는 대신 감면 대상을 축소함
- 2003년 이후에는 대상 사업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에 차등을 두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100% 감면되는 업종과 관세만 100% 감면되는 업종으로 나눔
 - 2009년에도 기본 제도는 유지하면서 감면 대상 업종을 조정함

<표 2> 연도별 주요 제도 변경사항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6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자도입촉진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등의 제도를 도입 ○ 이후 1966년 8월에 「외자도입촉진법」·「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및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이들 법률을 통합하여 「외자도입법」을 제정
1984.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에 한해 규정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율을 100%로 설정
1987.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율을 70%로 설정
1991. 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율을 50%로 개정
1995.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사업 종류에 따라 감면 세율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경우 100% 감면 -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50% 감면
1998. 1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제정 ○ 감면율 100%로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100%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100% 감면
1999.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으로 이관 및 신설
200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사업 종류에 따라 감면 세율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모두 10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관세만 100% 면제(기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기업

<표 2>의 계속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05. 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관세 등 면제)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관세만 면제)으로 구분하여 감면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모두 10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관세만 100% 면제(기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201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면제 대상 사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 새만금사업 시행자

자료: 저자 작성

바. 관세감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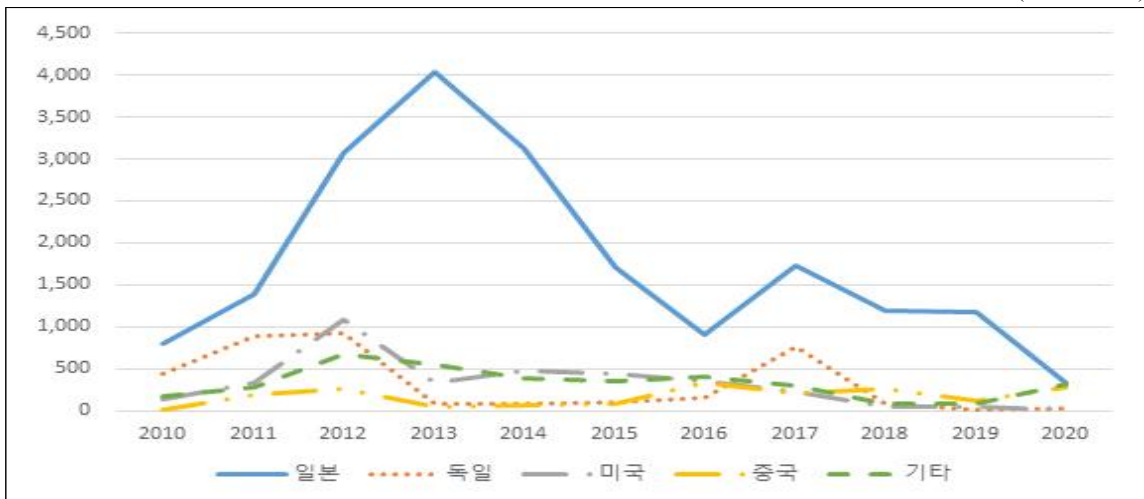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자본재도입으로 인한 관세감면액을 보면 평균적으로 약 195억원 정도이지만,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 수입액이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관세감면액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관세감면액은 2012년에 430억 9천만원으로 정점에 이른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관세감면액은 47억 5천만원으로 감소함
 - 관세감면액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감면액도 유사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42개국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여 관세감면을 받았는데, 그중 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본재가 가장 많고, 이로 인해 관세감면액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일본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금액은 약 1,378억원으로 총관세감면액 약 2,143억원의 약 64.3%를 차지하고 있음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자본재의 수입액도 1조 9천억원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총수입금액에서 약 60.9%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 다음으로 자본재 수입이 많은 국가로는 독일(11.5%)과 미국(9.2%)이 있으며, 이 두 국가의 자본재 수입액은 각각 3천억원을 넘었음
- 결과적으로 일본, 독일, 미국 등 3개국의 자본재 관세감면액이 전체에서 약 85.0%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 중국까지 포함하면 약 90.7%를 차지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약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체적으로 관세감면액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특히 일본으로부터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2020년에는 일본과 다른 국가들의 관세감면액이 유사한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동안 일본으로부터의 관세감면액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관세감면액이 유사한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그림 1] 주요 자본재 수입국의 수입액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자본재를 도입하면서 관세감면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은 기계류(HS 제84류)로 전체의 약 76.1%를 차지하고 있음
 - 전기기기류(HS 제85류), 광학기기기류(HS 제90류)를 포함하면 약 92.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기계류(HS 제84류)의 FTA 협정세율이 거의 무세로 진입하고 있어, 자본재 수입에 따른 관세 부담이 감소하고 있음
 - 2021년 기준으로 한·EU FTA와 한·미 FTA의 HS 제84류(기계류)의 협정세율은 모두 무관세(0%)로, EU와 미국에서 수입되는 HS 제84류(기계류)의 관세부담이 없어지게 됨
 - 한·중 FTA 협정세율도 점진적으로 무세인 품목이 증가하고 있음
 - 그리고 향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이 발효되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관세도 일정 부분 관세가 인하될 것으로 여겨짐
 - RCEP 체결로 일본 수입의 품목 수 기준 83%, 수입액 기준 76% 관세 인하 예정. 점진적으로 일본 관세부담 감소 예정

2. 타당성 및 효과성 평가

- 수혜 대상 기업 및 감면 적용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유사제도 혹은 중복지원은 없음
 - (수혜 대상) 제도 도입 목적에 적합하게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신기술 수반 기업이나 특정 투자지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까지만 면제 혜택 제공
 - (중복)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한정되어 지원하고 있어, 유사한 제도 혹은 중복지원은 없음

- 모형을 통한 이론적 분석과 함께 이론 모형에 모수를 대입하는 수치적(시물레이션) 분석 결과, 본 감면제도는 기업의 투자 및 재무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경제 여건에 따라 세수(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수입의 합)에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리고 코로나19 등과 같이 향후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감면정책의 효과성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
 - 경제의 불확실성이 관세감면제도의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표 3>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 관세 등의 감면정책 효과

구분		효과성 방향	불확실성 증가 시 효과성 변화
자본량		증가(+)	감소(-)
부채비율		감소(-)	증가(+)
기업 이윤		증가(+)	감소(-)
세수	부정적 경제 상황	감소(-)	증가(+)
	긍정적 경제 상황	증가(+)	감소(-)

주: 세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수입의 합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실증분석 결과, 관세 등의 면제로 인해 추가적인 투자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고용 창출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추산하면 자본재 관세감면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동 혜택을 받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대비 투자를 평균적으로 185 억원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됨
 -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유형자산(건물, 토지 제외)이 686억원임을 고려하면 관세감면으로 평균 185억원(=686억원×27%)의 추가적인 투자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표 4> 자본재 관세감면제도가 투자 및 고용에 미친 영향

구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투자	0.27**	0.30***
고용	7.72	8.64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 면제금액의 투자 탄력성은 확률효과모형 추정결과 0.02로 추정되었음
 - 관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 감면금액은 16억원이고 이들의 평균 유형자산(건물, 토지 제외)이 2천억원임을 고려하면, 관세 등의 감면금액이 1%(1,600만원) 증가할 때 투자가 4천만원 증가하여 감면금액 대비 약 2.5 배의 투자 증가를 유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5〉 자본재 관세감면제도가 투자 및 고용에 미친 탄력성 추정

구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투자	0.01**	0.02**
고용	0.40	0.43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이론적 분석과 수치적(시뮬레이션) 분석과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등의 감면제도는 감면 혜택을 받은 수혜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론적 분석과 그에 따른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본 제도로 인해 기업의 투자 및 채무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관세감면금액 대비 약 2.5배의 투자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이론적·실증적 분석 결과, 본 감면제도는 추가적인 투자 증가효과가 있어, 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 것으로 평가됨
 - 수혜 대상과 수혜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운용의 적절성도 담보될 수 있으므로 제도 운용 측면의 타당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관세감면제도는 FTA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폐지되어야 할 제도임
 -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가 주로 수입되는 미국, EU, 중국과는 이미 FTA가 체결되어 대부분의 자본재가 무관세(0%)로 수입되고 있음
 - 한·미 FTA와 한·EU FTA의 기계류 협정세율은 이미 무세(0%)이고 한·중 FTA의 협정세율도 무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

- 일본과의 RCEP이 발효되면 비중이 큰 일본 자본재도입 부담도 감소하기 때문에 향후 감면제도 철폐가 적절함
 - RCEP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일본 제품의 품목 수 기준 83%, 수입액 기준 76%에 대해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 따라서 일본 수입품의 관세감면이 적용되면 일본 자본재 관세부담도 감소할 예정임
 - 일본 수입품의 관세감면 중에는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들도 있음

- (단기적 제도 유지) 따라서 본 관세감면제도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일본과의 RCEP 발효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제안함
 - 단기적 유지에는 코로나19와 같은 현재의 부정적인 경제 환경에서 감면제도가 투자 감소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단기적으로 일본과의 RCEP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과의 RCEP 발효 이전 기간 동안에 일본 자본재도입 부담을 감소시켜 투자 증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혜택기간 축소) 본 관세감면제도를 단기적으로 운용한다면,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감면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여 운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 본 관세감면제도를 점차 축소할 예정이라는 정책 방향을 시장에 사전에 제시하는 측면이 있음
 - 조만간 일본과의 RCEP이 발효되면, 일본 자본재 수입의 부담이 감소해서 현재 5년인 관세감면 기간이 큰 의미가 없음
 - 현재도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투자가 3년 이내로 이루어져서,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해도 투자 증가효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 현재 약 80%의 기업이 3년 이내, 90% 기업이 4년 이내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표 6〉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기간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기업 수	49개	38개	27개	16개	13개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목 차

I. 서론	17
II.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현황	23
1. 외국인투자 동향	25
가. 투자규모의 변화	25
나. 국가별 투자 동향	28
다. 업종별 투자 동향	30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감면제도	32
가. 감면제도 개요	32
나.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 7년형	33
다.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 5년형	36
라. 요약	40
III.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감면제도	43
1.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요	45
가. 수혜 대상	48
나. 감면제도 변천	49
2.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 규모	51
가. 관세감면 규모: 총괄	51
나. 연도별 관세감면 규모	54
다. 국가별 관세감면 규모	58
라. 품목별 관세감면 규모	64
마. 기계류(제84류)의 주요 FTA 협정세율	72
3. 주요국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지원제도 비교	75
가. 호주	75
나. EU와 영국	77

IV.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제도입에 대한 조세감면효과 분석	79
1. 모형을 통한 효과분석	81
가. 기본 모형	82
나. 함수 및 모수 설정	91
다. 조세감면제도의 효과	95
라. 소결	108
2. 감면자료를 이용한 효과분석	110
가. 분석자료	110
나. 기초통계	112
다. 분석방법	115
라. 전체 표본분석 결과	120
마. 외국인투자기업 분석 결과	127
바. 소결	135
V. 결론 및 정책 제언	137
참고문헌	141

표 목 차

<표 II-1> 외국인투자 유입 추이	27
<표 II-2> 투자자 거주지별 외국인투자 비중(신고 기준)	28
<표 II-3>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업종별 비중(신고 기준)	31
<표 III-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45
<표 III-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46
<표 III-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47
<표 III-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48
<표 III-5> 외국인투자기업 관세감면제도의 변천과정	50
<표 III-6> 2010~2020년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액과 수입금액 규모	52
<표 III-7>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관세감면 신청기간	54
<표 III-8> 연도별·관세감면액 규모별 건수 비중	55
<표 III-9> 관세감면 대상 자본재의 신고 관세율별 관세감면액	55
<표 III-10> 연도별·신고 관세율별 관세감면 건수 비중	56
<표 III-11> 연도별·신고 관세율별 관세감면액 비중	56
<표 III-12> 연도별 FTA 협정세율 적용 관세감면 건수 비중	57
<표 III-13> 연도별 FTA 협정세율 적용 관세감면액 비중	57
<표 III-14> 2010~2020년 관세감면을 받은 자본재 수입국	58
<표 III-15> 2010~2020년 자본재 주요 수입국의 관세감면 규모	59
<표 III-16> 2010~2020년 자본재 주요 수입국의 수입금액 규모	59
<표 III-17> 주요 자본재 수입국 수입금액 추이	60
<표 III-18> 주요 자본재 수입국 관세감면액 추이	61
<표 III-19> 국가별·FTA 구분별 수입금액 비중	63
<표 III-20> 국가별·신고 관세율별 수입금액 비중	63
<표 III-21> 2010~2020년 관세감면 대상 주요 자본재 품목군(HS 2단위)	64
<표 III-22> 품목별·신고 관세율별 관세감면액 비중	65

<표 III-23> 품목별·관세감면액 규모별 건수	66
<표 III-24> 2010~2020년 관세감면 대상 주요 자본재 품목군(HS 4단위)	67
<표 III-25>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감면액 상위 품목 변화	68
<표 III-26> 독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감면액 상위 품목 변화	69
<표 III-27>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감면액 상위 품목 변화	70
<표 III-28>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감면액 상위 품목 변화	71
<표 III-29> 중국에서 수입된 HS 제84류의 FTA 협정세율별 세번 수	74
<표 III-30> 중국에서 수입된 전체 자본재의 FTA 협정세율별 세번 수	74
<표 IV-1> 모수 설정	95
<표 IV-2> 모의실험 결과($\tau_V=18.8\%$, $\sigma=0.20$)	96
<표 IV-3> 모의실험 결과($\tau_V=10.0\%$, $\sigma=0.20$)	96
<표 IV-4> 모의실험 결과($\tau_V=0.0\%$, $\sigma=0.20$)	97
<표 IV-5> τ_V 하락에 따른 기업의 행태 변화($\sigma=0.20$)	100
<표 IV-6> 모의실험 결과($\tau_V=18.8\%$, $\sigma=0.30$)	100
<표 IV-7> 모의실험 결과($\tau_V=10.0\%$, $\sigma=0.30$)	101
<표 IV-8> 모의실험 결과($\tau_V=0.0\%$, $\sigma=0.30$)	101
<표 IV-9> τ_V 하락에 따른 기업의 행태 변화($\sigma=0.30$)	103
<표 IV-10> σ 의 변화($\sigma=0.20 \rightarrow 0.30$)에 따른 변화($\tau_V=18.8\%$)	103
<표 IV-11> σ 의 변화($\sigma=0.20 \rightarrow 0.30$)에 따른 변화($\tau_V=10.0\%$)	104
<표 IV-12> σ 의 변화($\sigma=0.20 \rightarrow 0.30$)에 따른 변화($\tau_V=0.0\%$)	104
<표 IV-13> σ 의 변화($\sigma=0.25 \rightarrow 0.30$)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 효과	106
<표 IV-14> 자료의 관측치 및 기업 수 현황(2010~2020년)	111
<표 IV-15>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 여부에 따른 상장·비상장 기업 현황	112
<표 IV-16>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 여부에 따른 기업규모 현황	112
<표 IV-17> KISVALUE에 공시된 모든 기업의 기초통계량	113
<표 IV-18> 전체 기업의 기초통계(2010~2020년)	113
<표 IV-19> 자본재 관세 등을 감면받은 기업의 기초통계(2010~2020년)	114
<표 IV-20> 자본재 관세 등을 감면받은 기간	115
<표 IV-21>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2010~2020년)	120

<표 IV-22>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2010~2020년)	121
<표 IV-23>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기간별 분석)	122
<표 IV-24>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기간별 분석)	123
<표 IV-25>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2010~2020년)	124
<표 IV-26>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2010~2020년)	125
<표 IV-27>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기간별 분석)	126
<표 IV-28>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기간별 분석)	127
<표 IV-29>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2010~2020년)	128
<표 IV-30>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2010~2020년)	129
<표 IV-31>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기간별 분석)	130
<표 IV-32>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기간별 분석)	131
<표 IV-33>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2010~2020년)	132
<표 IV-34>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2010~2020년)	133
<표 IV-35>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기간별 분석)	134
<표 IV-36>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기간별 분석)	134

그림 목 차

[그림 II-1] 외국인투자 유입액 변화 추이	25
[그림 III-1] 2010~2020년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액 규모	51
[그림 III-2] 2010~2020년 자본재 수입금액 규모	52
[그림 III-3] 전체 외국인투자액 및 일본 제조업 투자 추이	53
[그림 III-4] 연도별·관세감면액 규모별 건수 비중	54
[그림 III-5] 주요 자본재 수입국 수입금액 추이	60
[그림 III-6] 주요 자본재 수입국 관세감면액 추이	61
[그림 III-7] 일본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한국 투자(제조업, 서비스업)	62
[그림 III-8]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감면액 상위 품목 순위 변화	68
[그림 III-9] 독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감면액 상위 품목 순위 변화	69
[그림 III-10]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감면액 상위 품목 순위 변화	70
[그림 III-11]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감면액 상위 품목 순위 변화	71
[그림 III-12] 2020년 일본에서 수입된 HS 제84류의 관세율 단순평균(HS 4자리 기준) ...	74

I. 서론



I. 서론

- 일정 기준에 적합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동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의 정책 대상자는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외국인투자지역 등 국민경제 기여도를 고려한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만족한 외국인투자기업임
 -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본재를 도입하여야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내 기존 주식 취득이나 합병 등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됨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에 대해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의 운용 목적은 외국인의 투자 촉진을 통해 국내 경기 활성화, 외국의 선진기술 유입, 그리고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함임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 본 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임
 - 본 제도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지를 분석
 - 이와 함께 국내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함

- 본 연구에서는 제Ⅱ장에서 전체적인 외국인투자의 동향과 특징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감면제도의 현황을 분석함
 - 외국인투자의 연도별 투자규모, 외국인투자자의 국가별 투자 동향, 그리고 업종별 투자 동향 등을 살펴봄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감면제도 현황을 살펴봄
 - 전반적인 감면제도의 개요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감면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7년형, 5년형 등의 기간별 감면제도의 특징을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감면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재 관세감면 등의 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봄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감면제도 현황, 제도 변천, 정책 대상자 등에 대해 살펴봄
 -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감면 등의 자료를 이용해서 관세감면 규모 현황을 분석함
 - 전체적인 관세감면 규모
 - 연도별, 국가별, 품목별 관세감면 규모 분석
 - 특히 관세감면을 받으면서 수입되는 자본재 중 수입이 가장 많은 기계류(HS 제18류)에 대한 FTA 협정세율 분석 등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외국의 관세감면제도를 조사하여 정리함

-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감면제도의 효과를 분석함
 - 모형을 통한 이론적 분석과 함께 이론 모형에 모수를 대입하는 수치적(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조세감면정책의 효과를 분석함
 -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감면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 고용 등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함

-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 결론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본 연구는 향후 정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유도 등의 정책을 설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반응을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현황



II.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현황

1. 외국인투자 동향

가. 투자규모의 변화

- [그림 II-1]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입액을 신고액과 도착액, 그리고 그린필드) 신고액으로 구분하여 2001~2020년의 변화 추이를 정리하였음
- <표 II-1>에서는 도착액과 신고액, 각각의 증가율,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 신고액에서 그린필드 신고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로 정리하였음
 - 외국인투자가 유입액이 감소한 연도에 음영을 주어 표시하였음

[그림 II -1] 외국인투자 유입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검색일자: 2021. 4. 6.

1) 그린필드형 투자는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의미함

-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변화 추이를 보면, 연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2001~2010년에는 대체로 횡보를 하는 경향을 보임
 - 도착액이 2001년 50억달러에서 2010년 55억달러로 5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음
 - 신고액은 113억달러에서 131억달러로 약 18억달러 증가하였음
 - 신고액은 2002~2003년, 2005~2007년, 2009년에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도착액은 2002년, 2006~2007년, 2009~2010년에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 특히 2009~2010년의 도착액 감소 폭이 커서 2008년에 84억달러였던 것이 2010년에는 55억달러로 되었음

- 2010년 이후에도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연도별로 큰 변화를 보여주진 하였지만, 기간 전체로 보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줌
 - 2011년에 도착액이 67억달러였는데, 2015년에는 167억달러, 2017년에는 173억달러가 되었음
 - 2019년과 2020년에는 2년 연속 감소하여 2020년에는 113억달러로 2012년의 107억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음
 - 신고액은 2011년 137억달러에서 2018년 269억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0년에는 206억달러가 됨

-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도 연도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최저치는 2010년의 41.7%이고, 최고치는 2015년의 79.7%임
 - 최근 5년간을 보면,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이 50~60% 정도 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신규투자에만 적용되므로 M&A 투자를 제외한 그린필드 투자 동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신고액에서 그린필드 신고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최저 2004년 51.8%, 최고 2011년 85.6%로 연도별 격차가 큼
 - 2003~2005년에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50% 대로 낮은 편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대체로 안정되는 추세를 보임
 - 2010년과 2011년에는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85% 수준까지 높아졌으나, 최근에는 대체로 70% 내외 수준에서 안정되는 경향을 보임

- 참고로 그린필드형 투자는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 자본의 유입이 국내 투자 및 고용의 증대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M&A형 투자는 외국자본으로 기존의 국내 기업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 투자·고용 증대와 직접 연계되지 않음

<표 II -1> 외국인투자 유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외국인투자 유입액		증가율		도착 비중 ¹⁾	그린필드 비중 ¹⁾
	도착액	신고액	도착	신고		
2001	5,035	11,288			44.6	76.5
2002	3,807	9,095	-24.4	-19.4	41.9	77.1
2003	5,145	6,471	35.1	-28.9	79.5	54.5
2004	9,246	12,796	79.7	97.8	72.3	51.8
2005	9,623	11,566	4.1	-9.6	83.2	54.5
2006	9,128	11,248	-5.1	-2.7	81.2	61.7
2007	7,877	10,516	-13.7	-6.5	74.9	76.4
2008	8,405	11,712	6.7	11.4	71.8	62.2
2009	6,760	11,484	-19.6	-1.9	58.9	70.6
2010	5,450	13,073	-19.4	13.8	41.7	84.6
2011	6,656	13,673	22.1	4.6	48.7	85.6
2012	10,719	16,286	61.0	19.1	65.8	77.0
2013	9,889	14,545	-7.7	-10.7	68.0	65.8
2014	12,346	19,000	24.8	30.6	65.0	58.0
2015	16,671	20,909	35.0	10.0	79.7	67.5
2016	10,849	21,295	-34.9	1.8	50.9	70.5
2017	13,805	22,948	27.2	7.8	60.2	68.4
2018	17,320	26,901	25.5	17.2	64.4	74.4
2019	13,393	23,328	-22.7	-13.3	57.4	68.2
2020	11,377	20,642	-15.0	-11.5	55.1	69.8

주: 1) 신고액 대비 비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검색일자: 2021. 4. 6.

나. 국가별 투자 동향

- <표 II-2>에는 신고 기준으로 외국인투자의 투자자 거주지 국가별 분포를 정리하였음
 - 총액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비중을 정리하였으며, 2001~2020년의 기간에 한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 국가는 음영을 주어 강조하였음
- 국가별 동향을 보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주었던 미국, 일본 등의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음
 - 미국은 2001~2005년에 총유입 신고액의 33.2%를 차지하였는데, 2016~2020년에는 23.1%로 10.1%p 낮아졌음
 - 같은 기간에 일본의 비중은 13.4%에서 5.7%로 7.7%p 낮아졌음
 - 네덜란드, 영국, 독일, 벨기에는 각각 8.4%, 8.6%, 4.5%, 3.6%에서 2.4%p, 2.9%p, 2.4%p, 3.3%p 낮아졌음
 -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유입 신고액도 총액의 3.3%에서 2.9%p 낮아짐

<표 II -2> 투자자 거주지별 외국인투자 비중(신고 기준)

(단위: %, %p)

구분	2001~2005(A)	2006~2010	2011~2015	2016~2020(B)	2001~2020	(A)-(B)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 미국	33.2	15.2	22.1	23.1	23.0	10.1
2 일본	13.4	14.7	16.2	5.7	11.5	7.7
3 네덜란드	8.4	12.2	6.1	6.0	7.6	2.4
4 싱가포르	2.6	5.5	7.8	8.0	6.6	-5.4
5 몰타	0.1	4.2	5.1	9.7	5.8	-9.6
6 영국	8.6	8.5	2.5	5.7	5.8	2.9
7 홍콩	2.7	2.4	6.9	7.3	5.5	-4.7
8 중국	3.1	2.3	6.0	7.4	5.4	-4.3
9 캐나다	4.4	1.7	4.0	3.1	3.3	1.3
10 독일	4.5	4.2	3.6	2.1	3.3	2.4
11 케이만군도	1.6	2.3	1.7	3.2	2.3	-1.6
12 프랑스	1.9	4.2	1.5	1.3	2.0	0.5
13 룩셈부르크	1.5	0.5	3.7	0.7	1.6	0.7
14 호주	0.5	2.2	0.6	2.0	1.4	-1.5
15 버진아일랜드	0.6	0.8	2.5	0.8	1.3	-0.2
16 아일랜드	0.6	1.9	1.0	1.0	1.1	-0.5
17 벨기에	3.6	1.4	0.2	0.3	1.1	3.3
18 스페인	0.2	1.2	0.3	1.6	1.0	-1.4
19 말레이시아	3.3	0.7	0.5	0.4	1.0	2.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검색일자: 2021. 4. 6.

- 외국인투자 유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증가한 국가는 싱가포르, 몰타, 홍콩, 중국 등임
 - 몰타의 비중이 2001~2005년에 0.1%였는데, 2016~2020년에는 9.7%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큰 국가가 되었음
 - 2016~2020년에 세 번째로 비중이 큰 국가는 싱가포르로 2001~2005년의 2.6%에서 5.4%p 증가하여 8.0%가 되었음
 - 중국의 비중은 3.1%에서 7.4%로 비중이 4.3%p 증가하였고, 홍콩도 2.7%에서 7.3%로 4.7%p 증가하였음
 - 그 외에 케이만군도, 호주, 스페인의 비중이 각각 1.6%p, 1.5%p, 1.4%p 증가하였으며, 아일랜드와 버진아일랜드의 비중도 각각 0.5%p, 0.2%p 증가하였음

- 정리해 보면, 전통적으로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던 경제 강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었음
 - 한편 외국인투자 유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국가 중에는 저세율의 소규모 국가들이 많이 포함됨
 - 싱가포르, 몰타, 홍콩,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아일랜드 등
 - 이는 경제 강국의 투자 자금이 소규모의 저세율 국가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커졌음을 시사함
 - 과거에는 유럽 지역의 국가 중 세율이 낮은 소규모 국가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한국의 투자 유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었는데, 이들 국가의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네덜란드의 비중은 8.4%에서 2.4%p 하락한 6.0%가 되었으며, 벨기에의 비중은 3.6%에서 3.3%p 하락하여 0.3%가 되었음
 - 이는 유럽과 OECD를 중심으로 전개된 국제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력의 결과로 이들 지역이 우회투자의 기지로서의 장점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시사함

다. 업종별 투자 동향

- <표 II-3>에는 신고 기준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업종별 비중 변화를 정리하였음
 - 표의 가장 오른 쪽 열에는 2001~2005년 유입액에서 차지하는 업종별 비중과 2016~2020년 유입액에서 차지하는 업종별 비중의 차이를 정리하였음
 - 업종별 비중이 증가한 업종은 음영을 주어 강조하였음

- 2001~2020년 외국인투자 유입액 누계에서 차지하는 대분류 산업별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이 6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그다음이 제조업 32.7%였으며,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업이 3.9%, 농·축·수산·광업이 0.1%를 차지하였음
 -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1~2005년 60.4%에서 2016~2020년 65.7%로 5.2%p 증가한 반면,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업의 비중은 8.1%에서 2.6%로 5.5%p 낮아졌음
 - 이 기간에 제조업의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음

-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이 외국인투자 유입액 전체의 22.3%(2001~2020년)를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큼
 - 그다음으로는 부동산업 12.2%, 도·소매(유통)업 8.8%, 정보통신업 6.9%,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업 3.8%, 숙박·음식업 3.6%의 순임

- 2001~2005년 유입액의 업종별 비중과 2016~2020년 유입액의 업종별 비중을 비교해 보면, 부동산업의 비중이 10.4%p 증가하여 증가 폭이 가장 컸음
 -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업의 비중은 1.3%에서 4.1%로 2.8%p 증가하였으며, 정보통신업의 비중은 6.6%에서 8.9%로 2.2%p 증가하였음
 - 서비스업 중에서 비중이 가장 많이 낮아진 업종은 여가·스포츠·오락업으로 8.3%에서 7.3%p 낮은 0.7%가 되었음
 - 유입액의 비중이 가장 큰 금융업의 경우에는 22.6%에서 21.2%로 비중이 1.4%p 낮아졌으며, 도·소매업의 비중도 1.2%p 낮아졌음

〈표 II -3〉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업종별 비중(신고 기준)

(단위: %, %p)

업종	2001~ 2005 (A)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2001~ 2020 (B)	(A)-(B)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축·수산·광업	0.1	0.0	0.1	0.1	0.1	-0.1
제조업	31.4	35.0	33.6	31.6	32.7	-0.2
식품	2.3	0.6	1.1	1.8	1.4	0.5
섬유·직물·의류	0.6	0.6	0.8	0.3	0.5	0.3
제지·목재	0.5	0.1	0.0	0.1	0.2	0.4
화공	5.8	5.3	10.6	9.6	8.4	-3.8
의약	0.5	1.5	1.0	1.2	1.1	-0.7
비금속 광물제품	1.7	1.7	4.4	0.4	2.0	1.2
금속·금속가공제품	1.7	2.1	1.8	1.0	1.6	0.6
기계장비·의료정밀	2.2	2.8	3.8	3.5	3.2	-1.3
전기·전자	11.0	12.0	5.6	5.8	7.7	5.2
운송용 기계	4.9	7.8	4.0	7.5	6.2	-2.6
기타 제조	0.3	0.5	0.4	0.5	0.4	-0.2
서비스업	60.4	62.4	62.3	65.7	63.3	-5.2
도·소매(유통)	9.7	11.1	7.1	8.5	8.8	1.2
숙박·음식점	3.6	3.1	4.0	3.5	3.6	0.1
운수·창고	2.5	3.9	1.6	1.8	2.3	0.7
정보통신	6.6	4.2	6.1	8.9	6.9	-2.2
금융·보험	22.6	24.6	21.8	21.2	22.3	1.4
부동산	5.1	10.3	13.1	15.6	12.2	-10.4
사업지원·임대	0.4	0.6	0.5	0.9	0.7	-0.5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1.3	3.2	5.2	4.1	3.8	-2.8
여가·스포츠·오락	8.3	0.7	2.0	0.7	2.3	7.6
공공·기타서비스	0.3	0.7	0.9	0.6	0.6	-0.3
전기가스·수도·환경·건설	8.1	2.6	4.0	2.6	3.9	5.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검색일자: 2021. 4. 6.

- 제조업 중에서 외국인투자 유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화공업으로 2001~2020년 유입액의 8.4%를 차지하였음
- 그다음은 전기·전자 7.7%, 운송용 기계 6.2%, 기계장비·의료정밀 3.2%, 비금속 광물제품 2.0%, 식품 1.4%의 순임

- 2001~2005년의 외국인투자 유입액과 2016~2020년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은 전체적으로 비중이 0.2%p 증가하였음
 - 화공업의 비중이 3.8%p 증가하여 증가 폭이 가장 컸음
 - 운송용 기계의 비중은 2.6%p 증가하였으며, 기계장비·의료정밀의 비중은 1.3%p 증가하였음
 - 비중이 눈에 띄게 하락한 분야는 전기·전자로 11%에서 5.8%로 낮아져 하락 폭이 5.2%p였음
 - 비금속 광물제품의 비중은 1.7%에서 0.4%로 1.2%p 낮아짐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감면제도

가. 감면제도 개요

- 2021년 현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임
 - 지방세 감면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규정됨
 -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규정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폐지된 제도의 경과규정임
 -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됨
 - 지방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하도록 시한이 정해졌지만,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적용을 제한하는 시한이 없음²⁾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신규투자에만 적용됨
- 다음 절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므로 본 절에서는 지방세 감면제도에 초점을 맞춰 설명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감면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기업에 적용됨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감면기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는 이를 7년형과 5년형으로 구분함
 - 7년형은 총감면기간이 7년으로, 처음 5년간 감면 대상 세액의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함
 - 7년형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제도가 적용됨
 - 5년형은 총감면기간이 5년으로, 처음 3년간 감면 대상 세액의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함
 -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기한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일 수 있음

- 감면 대상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이며, 각각 세액에서 외국인투자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만 감면 대상이 됨

- 외국인투자 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업개시일 이후 감면기한 내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됨
 -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 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 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감면기한이 적용됨

나.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 7년형

- 7년형 감면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 제1항 제1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 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 제1항 제2호)
 - 특정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해당되는 특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 제1항 제2호)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 신성장동력산업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규모가 미화 2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 적용 대상이 되는 기술은 시행령 별표 7에 규정된 신성장·원천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시행규칙 별표 14에 규정된 기술임
 - 시행령 별표 7에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총 12개 범주에서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가 규정됨
 - 시행규칙 별표 14에는 소재기술과 공정기술로 구분하여 시행령 별표 7에 직접 관련되는 소재·공정기술을 규정함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의 조세감면 요건(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것임
- ①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
 - 제조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자료처리·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시설

- 휴양콘도미니엄업
 - 청소년수련시설
 - ③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 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민간투자사업 중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³⁾
 - ④ 신성장동력산업의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00백만달러 이상이며,
 -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
 - ⑤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둘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
 - 앞에서 제시한 감면 대상 사업 영위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⁴⁾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년형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요건 중 ①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요건 중 ②
 - 청소년수련시설 제외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요건 중 ③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요건 중 ④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제주투자진흥지구⁴⁾에 입주하는 기업은 동시에 각 특구에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 요건도 충족시켜야 함

3) 귀속시설은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함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7년형 감면은 이들 기업이 특구에 입주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요구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적용됨
 - 이는 7년형 감면은 신성장동력산업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음을 의미함

다.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 5년형

- 정부가 정한 특정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특정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형 감면제도가 적용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3)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5)
 -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6)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7)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8)
 - 새만금사업지역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9)
 -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입주업체 지방세 감면 요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제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시설
- 휴양콘도미니엄업
- 청소년수련시설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민간투자사업중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의료업
- 신성장동력산업의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이며,
 -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문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 엔지니어링사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기업도시 개발구역 개발사업자 지방세 감면 요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4) 귀속시설은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함

-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 해당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또는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달러 이상
-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사업자 지방세 감면 요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달러 이상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 지방세 감면 요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제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업체 지방세 감면 요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 제조업
 - 엔지니어링사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카지노업,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 제외)

-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휴양 콘도미니엄업, 골프장 제외)
 - 국제회의시설업
 - 종합유원시설
 - 관광식당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사업
 - 궤도사업
 -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제외)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포함)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
 - 연구개발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사업의 지방세 감면 요건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제조업
 - 과거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
 - 신설 기업은 3년 내에 이 기준 충족시켜야 함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 연료, 식수, 선식(船食) 및 기내식(機內食) 등 선박 또는 항공기 용품의 공급업
-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라. 요약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중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는 폐지되어 2021년 현재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감면제도와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운영됨
- 지방세 감면제도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7년간 감면하는(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7년형과 5년간 감면하는(3년 100%, 그 후 2년 50%) 5년형으로 구분됨
 - 7년형 감면제도 적용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된 업종과 업종별 투자규모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투자지역
 - 특정 특구 입주 기업으로서 개별형 외국인투자 입주 기업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고 해당 위원회의 승인·의결을 거친 경우
 - 5년형 감면제도는 다양한 특구 입주 기업 및 특구 개발사업자에게 적용됨
 -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및 개발사업자,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 및 개발사업자, 자유무역지역 입주 사업자
- 지방세 감면제도는 신규투자에만 적용되며, M&A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 내국인과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만 감면됨
 - 지원 대상별로 적용 대상 업종과 요구하는 외국인투자규모가 규정되어 있음
 - 7년형 감면의 경우에 5년형 감면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됨

-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7년형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됨

Ⅲ.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감면제도



Ⅲ.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감면제도

1.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동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면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본재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⁵⁾하는 출자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표 Ⅲ-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p>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①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p>②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제2호의8, 제2호의9 및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p> <p>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2),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검색일자: 2021. 3. 29.

5)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 자본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9호)
 -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 포함)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 기타 주무부장관이 당해 시설의 최초 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운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표 III-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법 제121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 중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로 한다.

④ 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감면대상 해당여부 결정 이후 면제대상 자본재를 최초로 도입하는 때에 선택하는 통화(이하 이 조에서 “기준통화”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있어서 그 자본재의 가액은 면제대상 자본재도입 시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기준통화와 자본재도입대가 지급 통화 간 환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기준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검색일자: 2021. 3. 29.

〈표 III-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p>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p> <p>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투자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마.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p> <p>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p> <p>나. 자본재</p> <p>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p> <p>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p> <p>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p> <p>바. 제4호 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p> <p>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p> <p>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p> <p>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p> <p>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운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p>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 검색일자: 2021. 3. 29.

〈표 III-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p>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 제1항제 4호 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 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자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p>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 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 검색일자: 2021. 3. 29.

가. 수혜 대상

-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 및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고도기술 수반사업 투자기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
-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만을 면제함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시행자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일반지방산업단지 중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여 지정한 지역에 입주한 기업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 새만금사업 시행자

나. 감면제도 변천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1960년에 제정된 「외자도입촉진법」에 의해 시작되었음
 - 그 후 1966년에는 「외자도입법」으로 변경되어 외국인의 투자 인가에 의하여 도입된 자본재에 대한 관세 및 물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제도는 1984년 7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여 적용 대상 기업 범위에 따라 감면율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음
 - 1984년 7월 1일부터 「외자도입법」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되던 규정을 현재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함
- 1984년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100%를 감면하였음
 - 1987년에는 감면율을 70%로 축소하였고,
 - 1991년에는 다시 감면율을 50%로 축소함
- 1995년에는 대상 사업 종류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였고, 1998년에는 감면율을 100%로 상향하는 대신 감면 대상을 축소함
- 2003년 이후에는 대상 사업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에 차등을 두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100% 감면되는 업종과 관세만 100% 감면되는 업종으로 나눔

- 2009년에도 기본 제도는 유지하면서 감면 대상 업종을 조정함

<표 III -5> 외국인투자기업 관세감면제도의 변천과정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60. 1. 1.	○ 「외자도입촉진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등의 제도를 도입 ○ 이후 1966년 8월에 「외자도입촉진법」,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및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이들 법률을 통합하여 「외자도입법」을 제정
1984. 7. 1.	○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에 한해 규정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율을 100%로 설정
1987. 7. 1.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율을 70%로 설정
1991. 1. 14.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율을 50%로 개정
1995. 4. 1.	○ 대상 사업 종류에 따라 감면 세율 차등 -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경우 100% 감면 -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50% 감면
1998. 11. 17.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제정 ○ 감면율 100%로 상향 -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100%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100% 감면
1999. 5. 2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으로 이관 및 신설
2004. 1. 1.	○ 대상 사업 종류에 따라 감면 세율 차등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모두 100% 감면 ·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관세만 100% 면제(기타 사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기업
2005. 1. 5.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관세 등 면제)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관세만 면제)으로 구분하여 감면 차등 -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모두 100% 감면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관세만 100% 면제(기타 사업)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2014. 1. 1.	○ 관세 면제 대상 사업 추가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 새만금사업 시행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검색일자: 2021. 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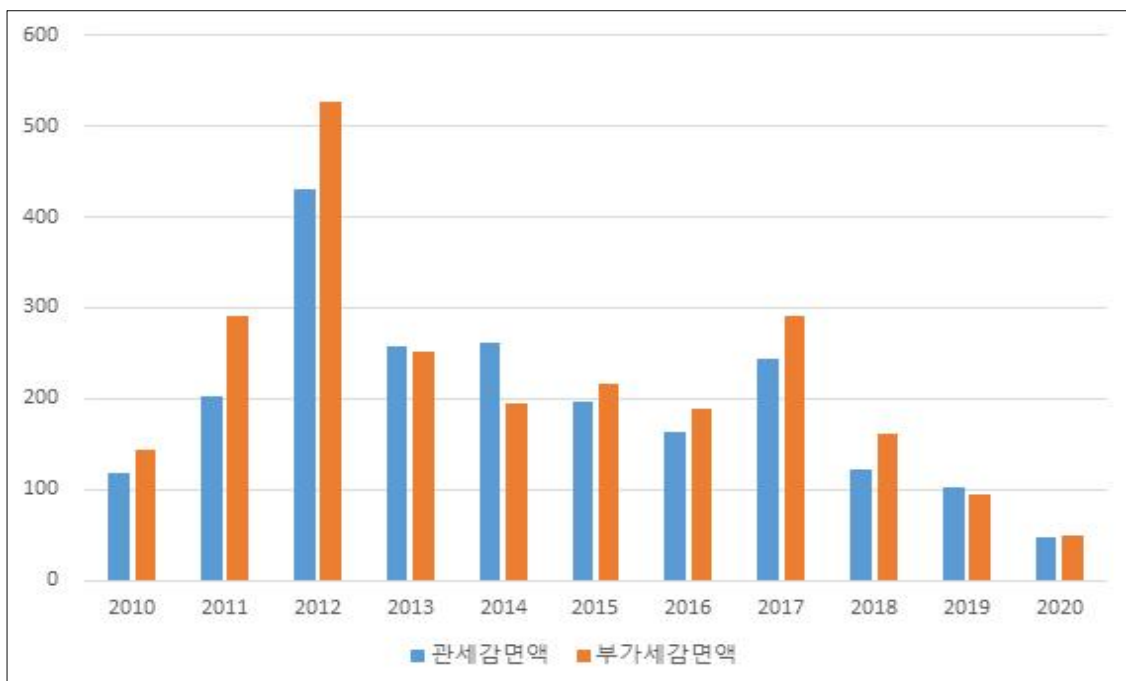
2.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 규모

가. 관세감면 규모: 총괄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자본재도입으로 인한 관세감면액을 보면 평균적으로 약 195억원 정도이지만,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수입액이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관세감면액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2년에는 대기업 중심의 큰 규모의 외국 합작회사 등이 등장하면서 관세감면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측됨
 - 관세감면액은 2012년에 430억 9천만원으로 정점에 이른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0년 관세감면액은 47억 5천만원으로 감소함
 - 관세감면액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감면액도 유사한 추세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III -1] 2010~2020년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액 규모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6> 2010~2020년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액과 수입금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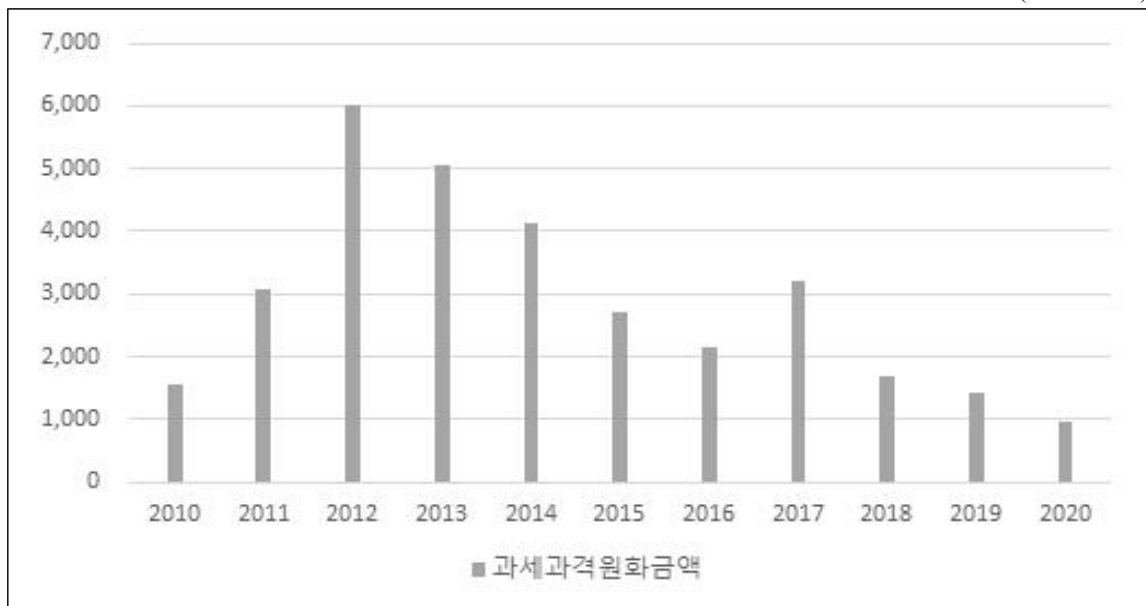
(단위: 억원)

연도	관세감면액	부가세 감면액	수입금액
2010	118.4	144.0	1,550.4
2011	201.9	290.3	3,085.8
2012	430.9	525.7	6,017.5
2013	256.7	251.0	5,043.8
2014	261.1	195.0	4,116.8
2015	197.1	215.9	2,700.9
2016	162.3	188.7	2,143.6
2017	243.0	290.4	3,218.4
2018	121.8	161.0	1,677.4
2019	102.3	93.7	1,435.0
2020	47.5	49.1	954.5
합계	2,142.9	2,404.8	31,943.9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I-2] 2010~2020년 자본재 수입금액 규모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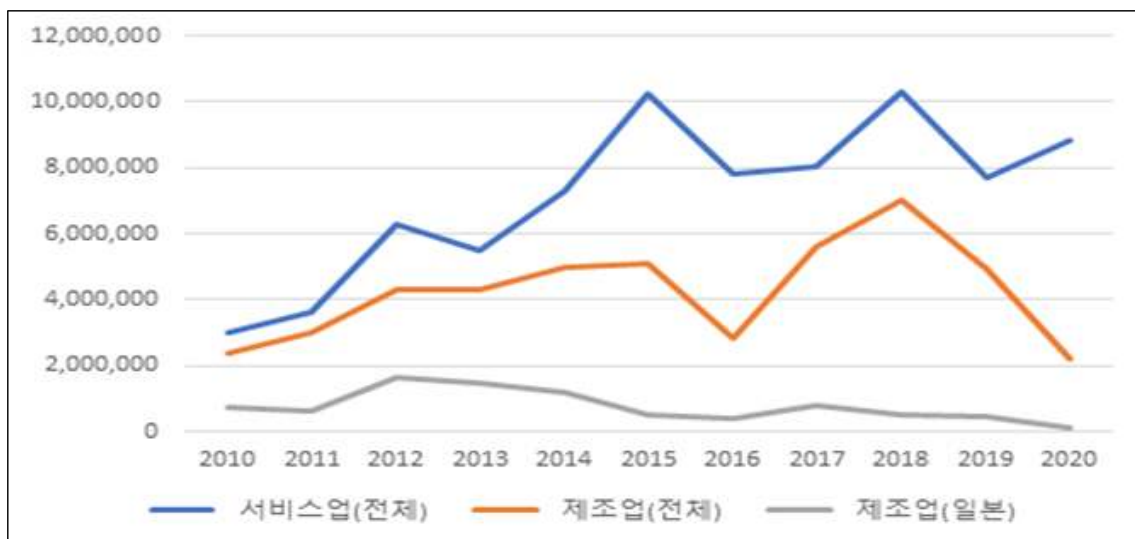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제조업 투자가 감소하고 대신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감면액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처럼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자본재도입으로 인한 관세 등의 감면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자본재 수입금액의 감소에 따른 것인데 이런 현상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제조업 투자가 감소하고 서비스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도 반영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는 서비스 분야에는 배달(앱),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공유경제(공유 오피스 등) 등이 있음
- 참고로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관세감면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제조업 투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I-3] 전체 외국인투자액 및 일본 제조업 투자 추이

(단위: 천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검색일자: 2021. 6. 21.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자본재도입으로 인한 관세감면을 신청한 기간을 살펴보면, 대개 3년 이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본재를 도입하여야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한 기간이 3년 이내인 기업이 전체의 약 80%
 - 그리고 4년 이내에 신청한 기업이 약 90% 수준임

<표 III-7>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관세감면 신청기간

(단위: 개)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기업 수	49개	38개	27개	16개	1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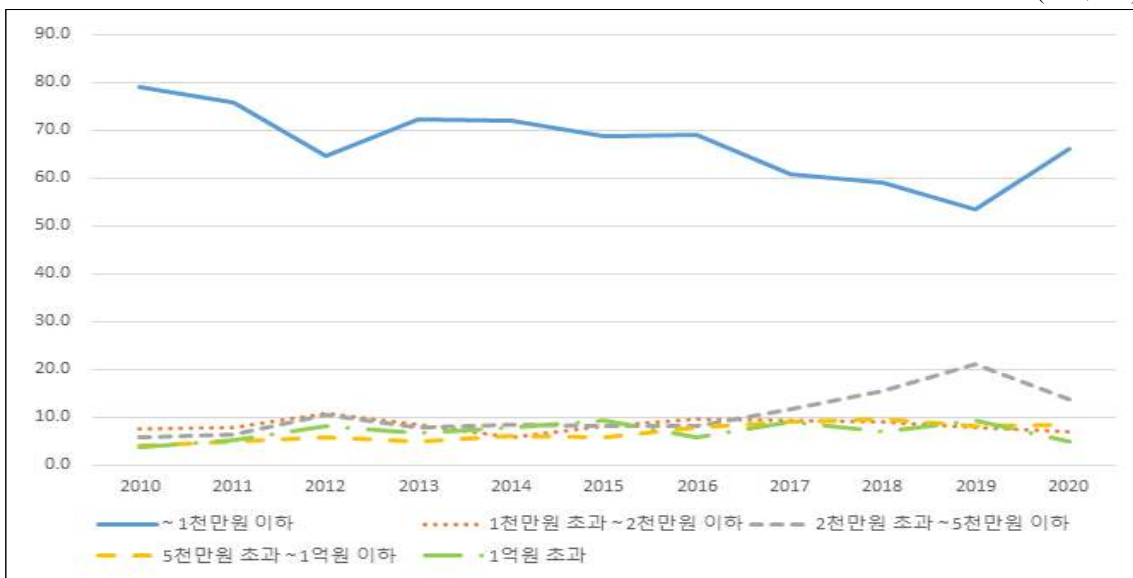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나. 연도별 관세감면 규모

- 연도별 관세감면액 구간별 분포는 1천만원 이하가 매년 전체 감면 건수의 약 60~80%를 차지하고 있음
 - 관세감면액 규모를 1천만원 이하, 1천만~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별 감면 건수 현황을 살펴봄
 - 다만, 수입된 자본재를 신고할 때 부품을 얼마만큼 나눠서 수입신고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여러 부품으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결합할지 아니면 기계 자체를 일체형으로 수입할지 등에 따라 달라짐

[그림 III-4] 연도별·관세감면액 규모별 건수 비중

(단위: %)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8> 연도별·관세감면액 규모별 건수 비중

(단위: %)

연도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초과
2010	79.1	7.5	5.7	3.9	3.8
2011	75.8	7.7	6.4	4.8	5.2
2012	64.7	10.8	10.6	5.8	8.1
2013	72.2	8.5	7.8	4.8	6.6
2014	71.9	5.8	8.4	6.1	7.8
2015	68.7	8.0	8.0	5.9	9.4
2016	69.0	9.5	8.2	7.7	5.7
2017	60.8	9.4	11.7	9.0	9.1
2018	59.0	9.1	15.4	9.6	6.9
2019	53.5	7.9	21.1	8.2	9.4
2020	66.0	6.9	13.8	8.5	4.8
합계	69.0	8.5	9.4	6.2	6.9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관세감면을 받은 자본재들은 대부분 기본 관세율로 수입되고 있음

- 그 밖에는 WTO 양허세율, FTA 협정세율, 할당관세로 수입되었음
 - 2011년에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2013년 이후로는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면서 관세감면을 받는 경우도 있음

<표 III-9> 관세감면 대상 자본재의 신고 관세율별 관세감면액

(단위: 억원)

연도	기본 관세	WTO 세율	할당관세	국제협력 관세	한·EU FTA	CIT	한·미 FTA
2010	117.9	0.3	0.0	0.0	0.0	0.0	0.0
2011	168.3	1.0	32.1	0.0	0.4	0.0	0.0
2012	384.0	45.5	0.0	0.0	1.3	0.0	0.1
2013	241.6	8.7	0.1	0.0	3.8	0.0	2.6
2014	254.9	1.2	0.0	0.0	4.9	0.0	0.0
2015	174.7	22.3	0.0	0.0	0.0	0.0	0.0
2016	160.2	1.0	0.0	0.0	0.0	0.0	0.0
2017	239.1	1.3	0.0	0.6	0.0	2.0	0.0
2018	109.8	0.7	0.0	10.1	0.0	1.2	0.0
2019	97.5	0.7	0.0	3.7	0.0	0.3	0.0
2020	44.2	0.6	0.0	0.2	0.0	0.0	0.0
합계	1,992.2	83.4	32.2	14.6	10.5	3.5	2.6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관세감면을 받은 자본재들의 관세율을 비교해 보면, 8%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자본재의 관세감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 그 결과 8%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자본재의 관세감면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I-10> 연도별·신고 관세율별 관세감면 건수 비중

(단위: %)

연도	0%	0~5%	5~8%	8%	8%~	총합계
2010	5.0	7.5	3.2	64.1	-	100.0
2011	7.4	6.9	5.2	62.0	0.1	100.0
2012	4.4	7.0	13.3	51.4	0.1	100.0
2013	7.7	11.1	6.8	37.8	-	100.0
2014	10.8	11.0	9.4	38.3	0.2	100.0
2015	5.9	13.3	7.6	47.2	-	100.0
2016	7.2	6.7	6.2	56.7	-	100.0
2017	7.1	8.1	5.3	67.1	-	100.0
2018	4.2	9.6	3.6	68.8	-	100.0
2019	7.5	11.0	5.0	56.0	-	100.0
2020	11.7	11.7	3.2	35.1	-	100.0
총합계	6.8	8.9	7.0	53.6	0.0	100.0

주: 1. 관세율은 “관세감면액/과세가격”으로 산출하였으며, 과세가격을 0으로 신고한 품목은 제외함
 2. 비중은 각 연도의 관세감면 총건수(과세가격 0인 건 포함) 대비 각 신고 관세율 구분별 건수의 비중임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11> 연도별·신고 관세율별 관세감면액 비중

(단위: %)

연도	0%	0~5%	5~8%	8%	8%~	총합계
2010	0.0	1.6	3.8	91.5	0.0	100.0
2011	0.0	18.0	2.8	73.7	0.0	100.0
2012	0.0	5.1	27.7	60.8	0.0	100.0
2013	0.0	4.5	23.0	59.4	0.0	100.0
2014	0.0	3.7	7.3	75.6	0.0	100.0
2015	0.0	2.6	16.8	75.9	0.0	100.0
2016	0.0	1.8	7.1	88.0	0.0	100.0
2017	0.0	1.3	1.3	96.5	0.0	100.0
2018	0.0	10.1	3.1	83.3	0.0	100.0
2019	0.0	5.9	1.9	89.8	0.0	100.0
2020	0.0	7.7	3.8	84.3	0.0	100.0
총합계	0.0	5.4	12.3	76.0	0.0	100.0

주: 1. 관세율은 “관세감면액/과세가격”으로 산출하였으며, 과세가격을 0으로 신고한 품목은 제외함
 2. 비중은 각 연도의 총관세감면액 대비 각 신고 관세율 구분별 감면액의 비중임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FTA 협정세율로 수입되는 자본재들 중 일부가 관세감면을 받고 있지만, 그 비중은 미미하고, 그 결과 관세감면액도 미미함

<표 III-12> 연도별 FTA 협정세율 적용 관세감면 건수 비중

(단위: %)

연도	비FTA	FTA	총합계
2010	93.2	6.8	100.0
2011	93.9	6.1	100.0
2012	98.9	1.1	100.0
2013	94.6	5.4	100.0
2014	93.4	6.6	100.0
2015	97.5	2.5	100.0
2016	96.7	3.3	100.0
2017	97.0	3.0	100.0
2018	98.7	1.3	100.0
2019	98.4	1.6	100.0
2020	86.7	13.3	100.0
합계	95.7	4.3	100.0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13> 연도별 FTA 협정세율 적용 관세감면액 비중

(단위: %)

연도	비FTA	FTA	총합계
2010	99.8	0.2	100.0
2011	99.7	0.3	100.0
2012	99.7	0.3	100.0
2013	97.5	2.5	100.0
2014	98.1	1.9	100.0
2015	100.0	0.0	100.0
2016	100.0	0.0	100.0
2017	100.0	0.0	100.0
2018	100.0	0.0	100.0
2019	100.0	0.0	100.0
2020	94.8	5.2	100.0
합계	99.3	0.7	100.0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국가별 관세감면 규모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42개국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여 관세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4> 2010~2020년 관세감면을 받은 자본재 수입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에스와티니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체코	캐나다	태국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특히 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본재가 가장 많으며, 이로 인해 관세감면액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본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금액은 약 1,378억원
 - 총관세감면액 약 2,143억원의 약 64.3%를 차지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자본재의 수입액도 1.9조원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 총수입금액 약 3.2조원에서 약 60.9%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 다음으로 자본재 수입이 많은 국가로는 독일과 미국이 있으며, 이 두 국가의 자본재 수입액은 각각 3천억원을 넘었음
 - 독일 자본재 수입액은 약 3,571억원이고 관세감면액은 약 247억원으로 전체 관세감면액의 약 11.5%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 자본재 수입액은 약 3,475억원이고 관세감면액은 약 197억원으로 전체 관세감면액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일본, 독일, 미국 등 3개국의 자본재 관세감면액이 전체에서 약 85.0%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 중국까지 포함하면 약 90.7%를 차지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약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5> 2010~2020년 자본재 주요 수입국의 관세감면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관세감면액	비중	누적 비중
일본	1,378	64.3	64.3
독일	247	11.5	75.8
미국	197	9.2	85.0
중국	122	5.7	90.7
이탈리아	43	2.0	92.7
스위스	28	1.3	94.0
프랑스	25	1.2	95.2
영국	15	0.7	95.9
	:	:	:
전체 총액	2,143		100.0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16> 2010~2020년 자본재 주요 수입국의 수입금액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수입금액	비중	누적 비중
일본	19,452	60.9	60.9
독일	3,571	11.2	72.1
미국	3,475	10.9	83.0
중국	1,864	5.8	88.8
이탈리아	741	2.3	91.1
스위스	491	1.5	92.6
프랑스	410	1.3	93.9
영국	382	1.2	95.1
	:	:	:
전체 총액	31,9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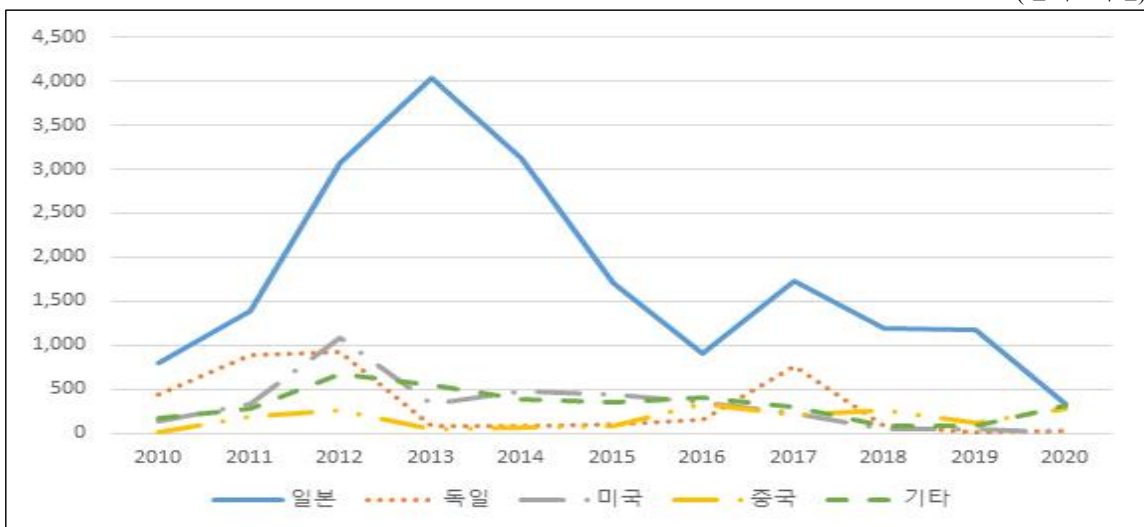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그러나 주요 자본재 수입국의 수입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액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액은 2013년 약 4,043억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328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독일과 미국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액도 2012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변화는 작았음
- 중국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액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 참고로 한·중 FTA는 2015년 말 발효되었음

[그림 III-5] 주요 자본재 수입국 수입금액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17> 주요 자본재 수입국 수입금액 추이

(단위: 억원)

연도	일본	독일	미국	중국	기타
2010	794.6	446.9	129.3	16.2	163.4
2011	1,394.8	888.2	335.7	182.6	284.5
2012	3,068.3	926.7	1,091.7	265.2	665.5
2013	4,043.1	88.7	326.3	39.4	546.3
2014	3,118.0	86.3	467.4	59.6	385.5
2015	1,719.3	98.6	442.8	86.7	353.5
2016	897.7	155.4	347.2	340.5	402.7
2017	1,719.7	763.2	230.3	207.7	297.6
2018	1,197.7	76.1	44.8	268.8	90.1
2019	1,170.4	5.0	48.2	124.2	87.2
2020	327.9	36.2	11.5	272.9	306.0
합계	19,451.6	3,571.2	3,475.2	1,863.8	3,5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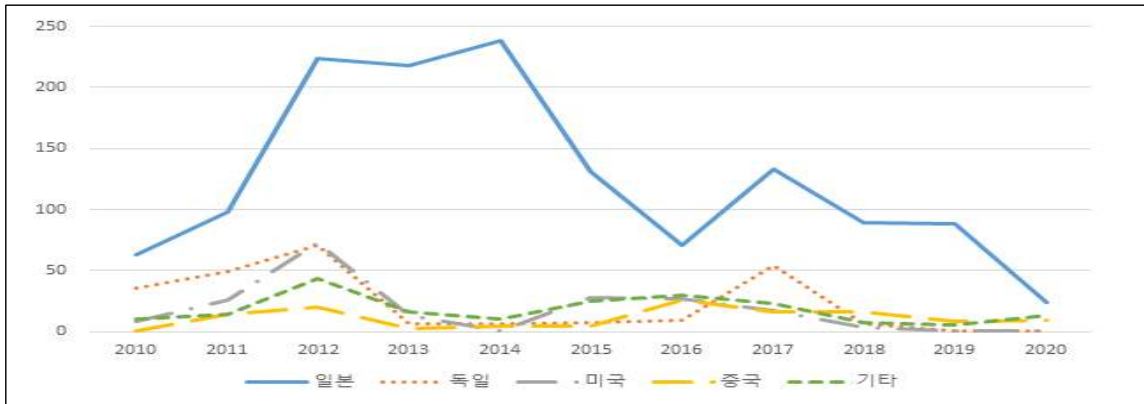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주요 자본재 수입국의 관세감면액 추이도 주요 자본재 수입국의 수입금액 추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일본으로부터의 관세감면액은 크게 감소하고 있고, 독일, 미국, 중국으로부터의 관세감면액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변화는 작았음

- 이처럼 일본으로부터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고 관세감면액도 감소하면서, 2020년에는 일본과 다른 국가들의 관세감면액이 유사한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동안 일본으로부터의 관세감면액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관세감면액이 유사한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그림 III-6] 주요 자본재 수입국 관세감면액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18> 주요 자본재 수입국 관세감면액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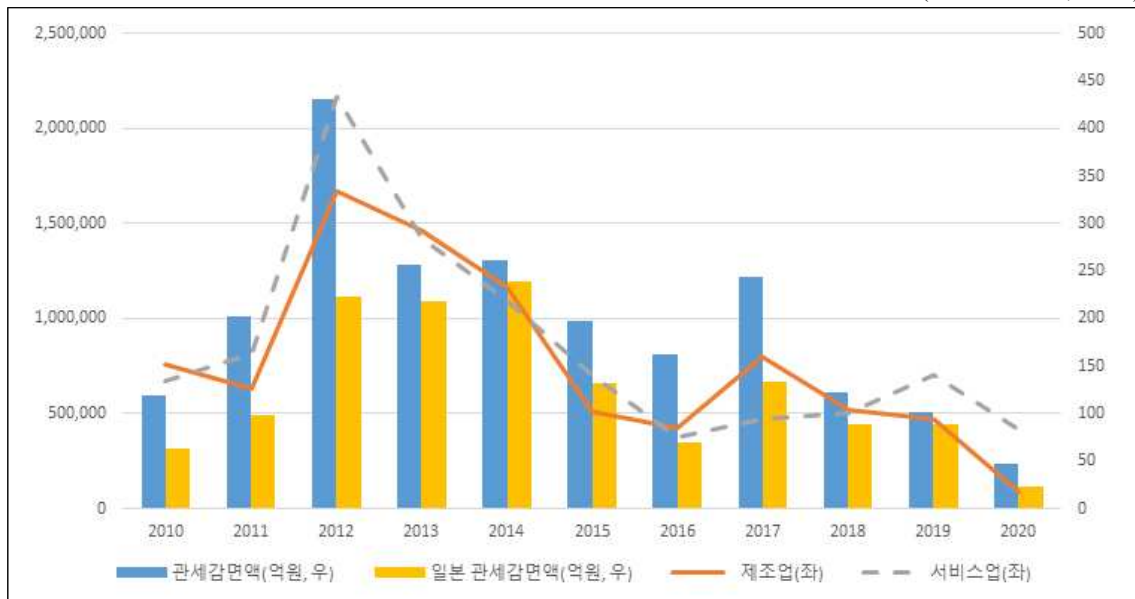
연도	일본	독일	미국	중국	기타
2010	63.2	35.6	8.7	0.3	10.5
2011	98.3	49.0	26.0	14.5	14.0
2012	223.6	71.0	72.6	19.8	43.9
2013	218.2	6.4	13.1	2.7	16.3
2014	238.5	6.8	0.7	4.6	10.5
2015	131.4	7.7	27.9	4.9	25.3
2016	70.4	8.9	27.1	26.2	29.8
2017	132.9	53.8	17.0	16.2	23.2
2018	89.4	5.9	3.5	15.9	7.1
2019	88.2	0.4	0.3	8.3	5.1
2020	23.9	1.0	0.5	8.9	13.1
합계	1,377.9	246.5	197.4	122.3	2,142.9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현재 일본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조업 투자가 2012년 이후 감소하는 가운데 자본재 도입에 따른 감면액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일본 제조업 투자와 감면액 추이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13년부터 일본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조업 투자와 관세감면액 추이가 거의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현재 한·EU FTA, 한·미 FTA에서는 이미 다수의 자본재 협정관세율이 0%이고, 한·중 FTA에서도 이미 무세(0%) 혹은 무세 진행 중에 있어서,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이 관세감면을 받는 것으로 여겨짐

[그림 III-7] 일본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한국 투자(제조업, 서비스업)

(단위: 천달러, 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검색일자: 2021. 6. 21.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으로부터 자본재 관세감면액이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 달리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일부 영향을 미침
 - 미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의 자본재 수입 중에는 약 20% 정도가 FTA 협정세율로 자본재가 수입되고 있음
 - 중국은 약 9.8%, 독일은 약 5.9%가 FTA 협정세율로 자본재가 수입되고 있음

〈표 III-19〉 국가별·FTA 구분별 수입금액 비중

(단위: %)

구분	비FTA	FTA	총합계
일본	100.0	0.0	100.0
독일	94.1	5.9	100.0
미국	82.4	17.6	100.0
중국	90.2	9.8	100.0
이탈리아	79.0	21.0	100.0
스위스	78.1	21.9	100.0
프랑스	72.7	27.3	100.0
	:	:	:
전체	94.3	5.7	100.0

주: 1. 비FTA와 FTA는 신고된 관세율구분 코드로 구분(A, C, P3 등이 비FTA에 해당하며, FAS, FEU, FUS 등이 FTA에 해당)
 2. 비중은 각 국가별 FTA 구분별 비중임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그래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관세율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8%로 수입되는 비중이 높은 편임
 - 독일도 일본과 유사하게 8% 비중이 높았지만, 그 대신 그 아래 세율 구간에서 일본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

〈표 III-20〉 국가별·신고 관세율별 수입금액 비중

(단위: %)

구분	0%	0~5%	5~8%	8%	8%~	총합계
일본	9.1	11.8	10.0	69.2	0.0	100.0
독일	5.7	18.6	6.3	69.5	0.0	100.0
미국	21.0	6.2	31.6	41.1	0.0	100.0
중국	6.1	23.4	9.0	61.5	0.0	100.0
이탈리아	25.4	5.3	19.7	49.6	0.0	100.0
스위스	18.0	21.1	6.4	54.4	0.0	100.0
프랑스	2.0	28.8	2.0	67.2	0.0	100.0
	:	:	:	:	:	:
전체	10.8	13.4	12.0	63.8	0.0	100.0

주: 관세율은 “관세감면액/과세가격”으로 산출하였으며, 과세가격을 0으로 신고한 품목은 제외함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라. 품목별 관세감면 규모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자본재 관세감면을 받은 대표적인 품목은 HS 제84류 기계류였음
 - 관세감면을 받은 품목들 중에서 HS 제84류가 전체 관세감면액 중 약 76.1%를 차지하고 있음
 - 본 제도가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이기 때문에 기계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다음으로 제85류와 제90류가 각각 약 8.1%를, 그리고 제38류가 약 3.7%를 차지하고 있음
 - 상위 4개 품목군(제84류, 제85류, 제90류, 제38류)의 관세감면액은 전체 관세감면액의 약 95.9%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21> 2010~2020년 관세감면 대상 주요 자본재 품목군(HS 2단위)

(단위: 억원, %)

구분	관세감면액	비중	누적비중
제84류 (기계류)	1,630	76.1	76.1
제85류 (전자 기기류)	173	8.1	84.1
제90류 (광학 기기류)	173	8.1	92.2
제38류 (화학공업 생산품류)	78	3.7	95.9
제69류 (도자 제품류)	35	1.6	97.5
제73류 (철강 제품류)	27	1.2	98.7
제27류 (광물성 연료류)	7	0.3	99.0
	:	:	:
전체 총액	2,143		100.0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주요 자본재 품목군에 신고된 관세율을 수준을 보면 대부분 8%에 분포되어 있으며, 품목별로 해당 품목의 관세율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부분 8% 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되어 관세감면을 받음
 - 제38류(화학공업 생산품류)는 WTO 양허세율(대개 6.5% 정도) 영향으로 5~8% 구간에 대부분(92.3%) 분포되어 있음
 - 제27류(광물성 연료류)는 원자재 관세율로 인해 0~5% 구간에 대부분(88.3%) 분포되어 있음

〈표 III-22〉 품목별·신고 관세율별 관세감면액 비중

(단위: %)

구분	0%	0~5%	5~8%	8%	8%~	총합계
제84류 (기계류)	0.0	5.6	9.2	80.2	0.0	100.0
제85류 (전자 기기류)	0.0	2.2	7.2	74.3	0.0	100.0
제90류 (광학 기기류)	0.0	3.3	6.3	81.4	0.0	100.0
제38류 (화학공업 생산품류)	0.0	5.9	92.3	0.1	0.0	100.0
제69류 (도자 제품류)	0.0	3.4	7.6	74.8	0.0	100.0
제73류 (철강 제품류)	0.0	1.9	22.0	67.8	0.0	100.0
제27류 (광물성 연료류)	0.0	88.3	11.1	0.0	0.0	100.0
	:	:	:	:	:	:
전체	0.0	5.4	12.3	76.0	0.0	100.0

주: 1. 관세율은 “관세감면액/과세가격”으로 산출하였으며, 과세가격을 0으로 신고한 품목은 제외함
 2. 비중은 각 연도의 총관세감면액 대비 각 신고 관세율 구분별 관세감면액의 비중임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품목별로 관세감면을 신청한 건수를 관세감면액 규모별로 구분해 분석하면, 대부분의 관세감면액은 1천만원 이하에 분포되어 있음
 - 제84류의 관세감면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관세감면액은 1천만원 이하에 절반 이상(62.7%)을 차지하고 있음
 - 다만, 건수가 많다고 관세감면액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며, 건수는 자본재를 수입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음

- 예를 들어, 완성된 기계 본체를 수입하는지 또는 기계 본체를 몇 개로 나눠서 수입한 후 국내에서 조립하는지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음
- 관세감면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제84류가 가장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23> 품목별·관세감면액 규모별 건수

(단위: 건)

구분	1천만원 이하	1천만~2천만원	2천만~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원 초과	전체
제84류 (기계류)	2,854	398	519	364	415	4,550
제90류 (광학 기기류)	771	108	69	28	28	1,004
제85류 (전자 기기류)	557	75	86	38	50	806
제73류 (철강제품류)	310	12	9	14	4	349
제38류 (화학공업 생산품류)	71	11	9	7	14	112
제39류 (플라스틱류)	102	3	1			106
제69류 (도자 제품류)	56	9	6	13	7	91
	:	:	:	:	:	:
전체	5,226	647	715	469	522	7,579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품목을 더 세분화하여 HS 4단위 기준으로 분류하면, HS 8479의 관세감면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HS 8479는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중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기계류 품목으로 전체 관세감면액의 약 16.4%를 차지하고 있음
 - 그다음으로 HS 8419(가열 살균건조기기)가 약 11.0%, HS 8477(고무 플라스틱 사출성형기)는 약 10.7%, 그리고 HS 8475(유리제품 제조 가공기계)가 약 9.0%를 전체 관세감면액에서 차지하고 있음

<표 III-24> 2010~2020년 관세감면 대상 주요 자본재 품목군(HS 4단위)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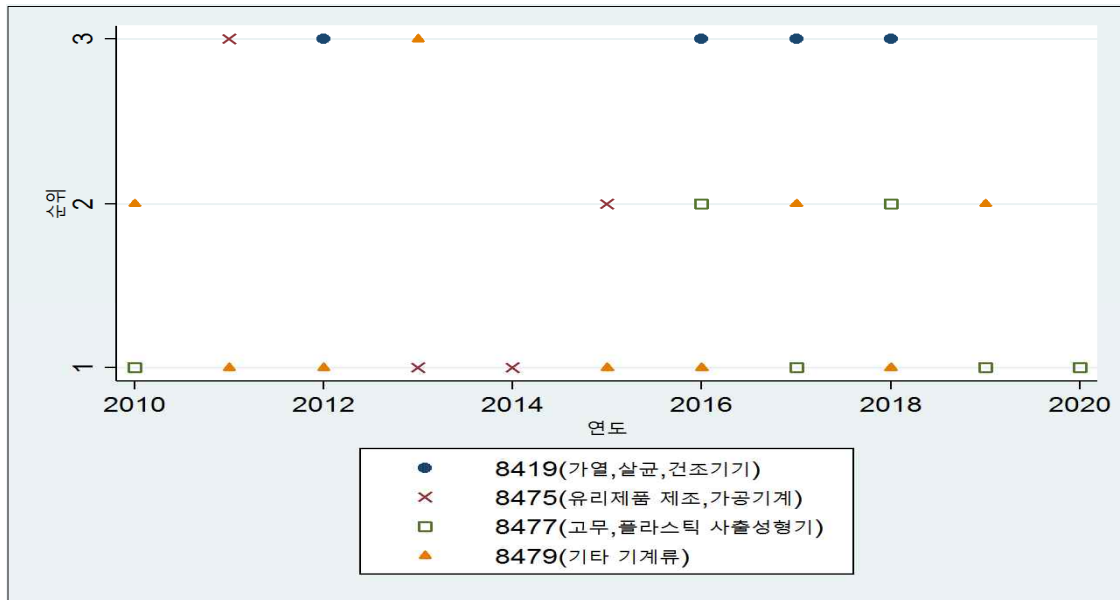
구분	관세 감면액	비중	누적 비중
HS 8479 (기타 제84류(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기계)	352	16.4	16.4
HS 8419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 증발·응축·냉각과 기타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 가열기)	236	11.0	27.4
HS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230	10.7	38.1
HS 8475 (전기램프 또는 전자램프·튜브·밸브 또는 플래시벌브 (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및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 가공용의 기계)	192	9.0	47.1
HS 8414 (기체펌프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	131	6.1	53.2
HS 9031 (기타 제90류(광학·측정·의료기기)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와 윤곽 투영기)	125	5.8	59.0
HS 8514 (공업용 또는 실험실용 전기식 노와 오븐과 기타 공업용 또는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손실식 가열기)	91	4.3	63.3
HS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	71	3.3	66.6
HS 8421 (원심분리기, 액체용 또는 기체용 여과기 또는 청정기)	64	3.0	69.6
HS 8486 (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59	2.8	72.3
	:	:	:
전체 총액	2,143		100.0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국가별 자본재의 관세감면액 상위 품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본은 HS 8479와 HS 8477가 상위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III-8]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감면액 상위 품목 순위 변화



주: 2010~2020년 기간 동안 상위 3개 품목에 많이 포함(4회 이상)된 주요 품목 기준임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25>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감면액 상위 품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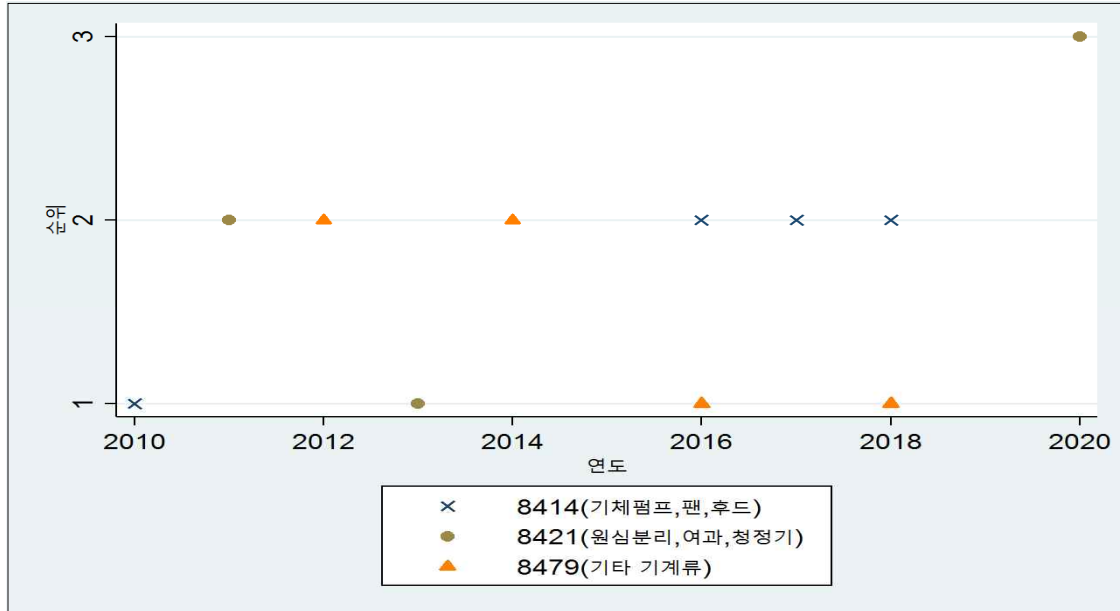
(단위: 억원)

연도	1위		2위		3위	
	품목	감면액	품목	감면액	품목	감면액
2010	8477	11.7	8479	10.7	8457	8.2
2011	8479	25.1	8457	16.2	8475	12.8
2012	8479	43.2	8466	26.6	8419	23.6
2013	8475	33.8	8514	31.1	8479	28.8
2014	8475	95.7	9031	48.7	8514	29.4
2015	8479	29.4	8475	27.1	8414	25.3
2016	8479	22.6	8477	18.1	8419	8.4
2017	8477	51.2	8479	49.3	8419	17.1
2018	8479	33.5	8477	25.1	8419	16.0
2019	8477	35.5	8479	17.3	8481	8.5
2020	8477	10.3	8465	2.5	8421	2.3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독일은 HS 8479와 HS 8414가 상위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III-9] 독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감면액 상위 품목 순위 변화



주: 2010~2020년 기간 동안 상위 3개 품목에 많이 포함(3회 이상)된 주요 품목 기준임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26> 독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감면액 상위 품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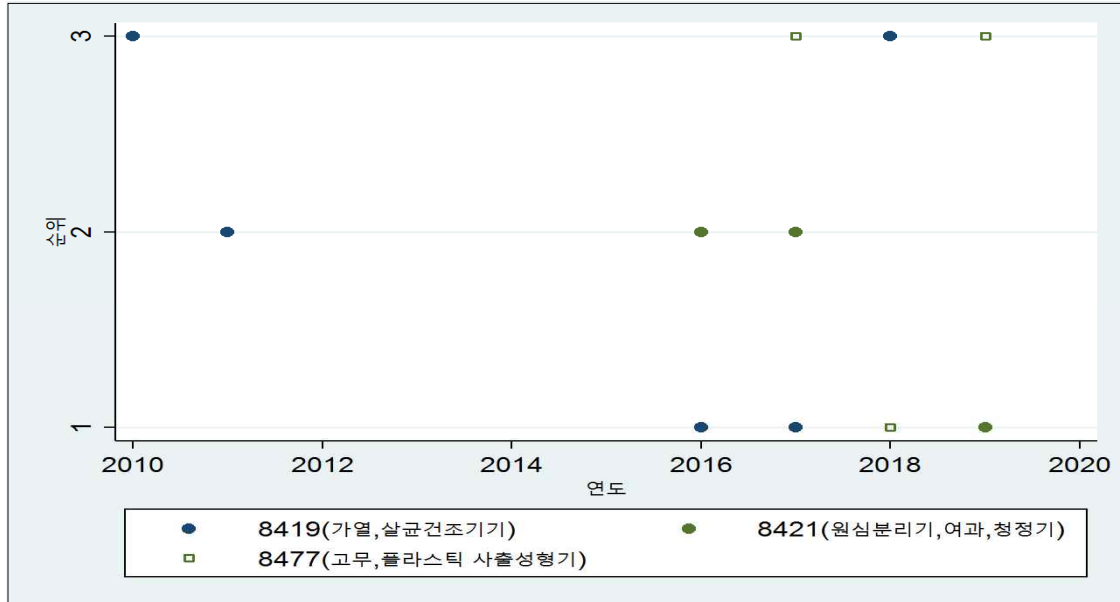
(단위: 억원)

연도	1위		2위		3위	
	품목	감면액	품목	감면액	품목	감면액
2010	8414	11.4	8419	3.9	8412	3.5
2011	8475	20.0	8421	5.9	8422	3.1
2012	8486	28.2	8479	9.4	9031	8.5
2013	8421	2.7	9031	1.2	8457	0.9
2014	8514	3.1	8479	1.4	8515	1.2
2015	8481	2.7	9027	1.5	8419	1.2
2016	8479	4.5	8414	2.0	9031	0.8
2017	8449	30.0	8414	8.0	8477	5.3
2018	8479	3.6	8414	0.8	9027	0.8
2019	3824	0.1	8477	0.1	8481	0.1
2020	8537	1.0	8501	0.0	8421	0.0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미국은 HS 8419와 HS 8421이 상위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III-10]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감면액 상위 품목 순위 변화



주: 2010~2020년 기간 동안 상위 3개 품목에 많이 포함(3회 이상)된 주요 품목 기준임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27>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감면액 상위 품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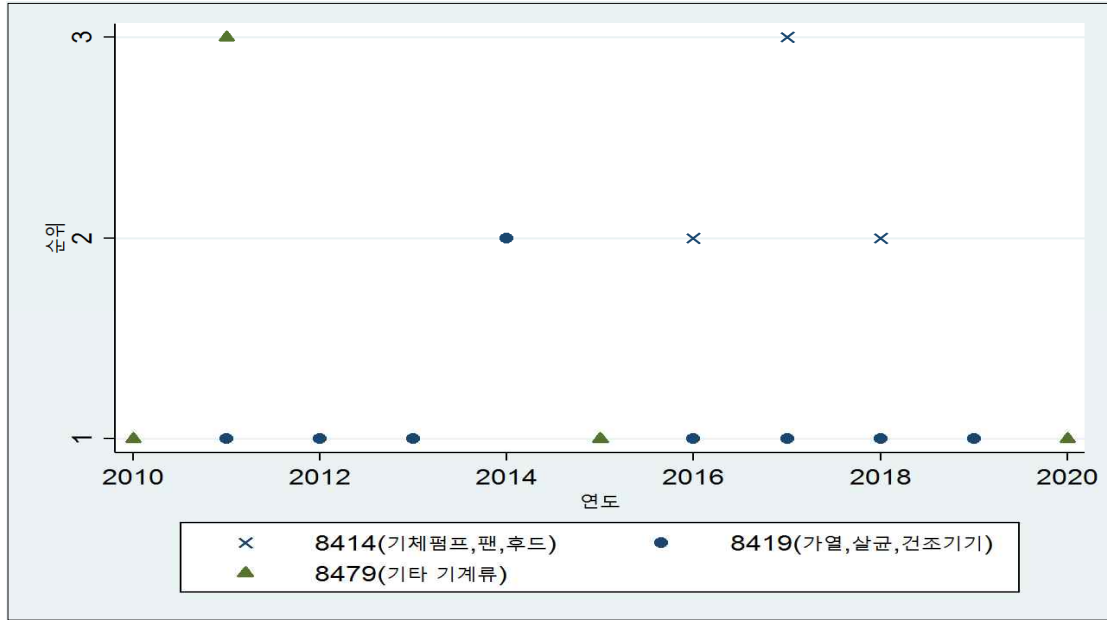
(단위: 억원)

연도	1위		2위		3위	
	품목	감면액	품목	감면액	품목	감면액
2010	9032	2.3	8462	1.9	8419	0.7
2011	8416	10.4	8419	4.7	8501	2.9
2012	3815	30.0	8543	8.6	8481	8.1
2013	8543	6.0	8481	2.9	8413	1.1
2014	8413	0.4	8436	0.1	8486	0.1
2015	3815	20.7	9031	5.0	3824	0.9
2016	8419	20.3	8421	5.0	9031	0.5
2017	8419	9.2	8421	3.0	8477	1.8
2018	8477	2.3	9508	0.6	8419	0.2
2019	8421	0.2	8466	0.1	8477	0.0
2020	2804	0.2	8479	0.2	8536	0.1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중국은 HS 8419가 주로 상위 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III-11]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감면액 상위 품목 순위 변화



주: 2010~2020년 기간 동안 상위 3개 품목에 많이 포함(3회 이상)된 주요 품목 기준임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28>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의 감면액 상위 품목 변화

(단위: 억원)

연도	1위		2위		3위	
	품목	감면액	품목	감면액	품목	감면액
2010	8479	0.3	8480	0.0	8537	0.0
2011	8419	12.7	8438	0.5	8479	0.4
2012	8419	10.6	3824	3.6	8405	2.5
2013	8419	0.8	8481	0.4	3824	0.4
2014	8436	2.1	8419	0.9	2934	0.7
2015	8479	4.0	8421	0.3	2818	0.3
2016	8419	12.7	8414	5.5	7309	3.0
2017	8419	7.8	8477	3.4	8414	3.0
2018	8419	10.3	8414	2.6	8514	1.1
2019	8419	4.0	8417	1.5	8477	0.7
2020	8479	5.2	8455	2.2	8480	0.6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마. 기계류(제84류)의 주요 FTA 협정세율

-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자본재를 도입하면서 관세감면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은 기계류(HS 제84류)인데, HS 제84류의 주요 FTA별 협정세율을 살펴보고자 함
 - HS 제84류는 일본, EU,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음
 -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 EU, 미국, 중국 등과는 FTA를 체결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는 RCEP 발효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일본은 RCEP의 회원국으로서 RCEP이 발효되면 일본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 인하가 시행될 예정임
 -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품목 수 기준 83%, 수입액 기준 76%의 관세 인하를 시행할 예정임⁶⁾
 -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를 제외하고, 개방 품목도 장기(10~20년) 및 비선형 철폐를 다수 활용하여 보호
 - 공산품은 품목 기준 91.7%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고, 장기 철폐(10년 이상) 비중은 41.6%, 20년 관세 철폐 품목은 455개, 그리고 비선형 철폐 105개 품목임⁷⁾

- 현재 한·EU FTA의 HS 제84류(기계류)의 협정세율은 모두 무관세(0%)임
 - 한·EU FTA의 HS 제84류의 양허유형은 0, 3, 5, 7이며, 이 중 가장 긴 관세 철폐 일정을 가진 7유형도 이미 2020년 관세율은 0%임
 - 따라서 한·EU FTA의 HS 제84류 협정세율은 2020년 기준 모두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

- 그리고 한·미 FTA의 HS 제84류(기계류)의 협정세율도 역시 2021년부터 모두 무관세(0%)임
 - 한·미 FTA의 HS 제84류의 양허유형은 A, C, D, G, K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양허유형 G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2020년 관세율이 이미 0%임
 - 양허유형 G의 경우 한·미 FTA 발효일로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가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부터 무관세가 적용됨
 - 따라서 양허유형 G인 품목은 2021년부터 무관세(0%)가 적용됨
 - 참고로 한·미 FTA에서 HS 제84류 중 양허유형이 G 품목은 총 45개

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2020. 11. 15.

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2020. 11. 15.

- 이 중 43개 품목의 기준 세율이 8%로 이들의 2020년 관세율은 0.8%였음
- 다른 2개 품목의 관세율은 각각 13%와 16%로 2020년 관세율은 각각 1.3%와 1.6%였음

- 따라서 EU와 미국에서 수입되는 HS 제84류(기계류)의 관세부담은 없어지게 됨
 -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자본재 수입은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EU 국가와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 관세감면을 받은 자본재 수입액 기준으로 일본이 60.9%, 중국 5.8%

- 한·중 FTA 협정세율은 한·EU FTA와 한·미 FTA와 달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무세(0%)의 협정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중 FTA 협정세율은 약 0~8%대까지 다양한 세율이 존재
 - 2010~2020년 사이 중국에서 수입되어 자본재 관세감면을 받은 HS 제84류의 품목 수 중에서 절반 정도가 협정세율이 무세(0%)임
 - 중국에서 수입되어 자본재 관세감면을 받은 HS 제84류의 품목 수는 350개이고, 이 중에서 한·중 FTA 협정세율이 무세(0%)인 품목 수는 153~177개로 거의 절반 정도가 협정세율이 무세(0%)임
 - 동일한 HS 10에서 협정세율이 0%와 2.4%로 2개인 세 번이 있고 이를 구분할 수 없어서 최대 177개로 표시함
 - 이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면, 즉, 2010~2020년 사이 중국에서 수입되어 자본재 관세감면을 받은 전체 품목으로 살펴보면, 여기서도 거의 절반 정도가 협정세율이 무세(0%)임
 - 중국에서 수입되어 자본재 관세감면을 받은 전체 품목은 HS 10단위로 총 580개이고, 이 중에서 한·중 FTA 협정세율이 무세(0%)인 품목 수는 279~308개로 거의 절반 정도가 협정세율이 무세(0%)임

- 최근 들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 중에서 한·중 FTA 협정세율이 무세(0%)인 세번들로 수입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중 FTA 협정세율이 매년 인하되어 무세(0%)로 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함

<표 III-29> 중국에서 수입된 HS 제84류의 FTA 협정세율별 세번 수

(단위: 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0%	12	15	20	25
0%/2.4%	2	2	2	2
무세 이외의 세율	25	19	9	18
전체	39	36	31	45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30> 중국에서 수입된 전체 자본재의 FTA 협정세율별 세번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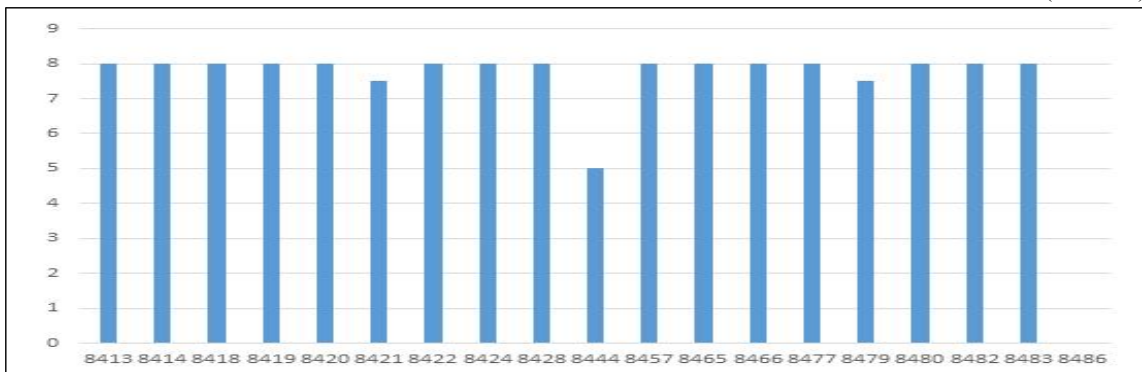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0%	21	24	40	30
0%/2.4%	2	3	2	2
무세 이외의 세율	31	26	16	27
전체	54	53	58	59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가장 많은 자본재를 수입하는 일본은 아직까지 양국 간 FTA가 체결되지 않아 기본 관세율 혹은 WTO 양허세율 등이 적용되고 있음
 - 기본관세율 혹은 WTO 양허세율 등이 적용되고 있어 대부분 8%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한·일 FTA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타결되지는 않았음
 - 다만 RCEP 협상이 타결되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RCEP 협정이 발효되면 일본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품목 수 기준으로 83%, 수입액 기준으로 76%의 관세 인하를 시행할 예정임

[그림 III-12] 2020년 일본에서 수입된 HS 제84류의 관세율 단순평균(HS 4자리 기준)

(단위: %)



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기계류의 품목별 단순평균 세율은 실제 수입된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함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중장기적으로 EU 국가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는 무세인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고, 한·중 FTA 협정세율도 낮아지고 있고, 일본과의 RCEP도 발효되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자본재 관세감면액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 비중이 큰 상황에서 RCEP이 2022년 이후 발효될 수 있고, RCEP이 발효되어도 일본에 대한 관세 인하 일정이 10년 철폐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관세감면액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3. 주요국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지원제도 비교

- 자본재도입에 대해 관세감면 등의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찾기 어려웠음
 - 특정 대상 혹은 특정 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해 관세감면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세율 정책은 아니고
 - FTA 등이 확대되면서 관세율 수준이 낮아져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기도 함

가. 호주⁸⁾

- 호주에서 2016년 5월까지 운영된 Enhanced Project By-law Scheme(EPBS)은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임
 - 특정 업종의 호주 기업이 호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호주에서 생산되는 것에 비해 기술 수준이 우수한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그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 호주 정부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주요 공적·사적 프로젝트에 대해 호주 기업에 완전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Australian Industry Participation(AIP)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일환으로 EPBS가 운영됨
 - EPBS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세계적 기업의 설립을 위한 투자 촉진

8) 호주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EEQO(Freight Forwarder Quoteonline) 홈페이지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https://www.freightforwarderquoteonline.com.au/news-freight-forwarding-custom-brokerclearance/enhanced-project-law-scheme-epbs-scrapped-3-may>, 검색일자: 2021. 4. 7.)

- 호주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 지원
- 필요한 경우, 기업의 원가 절감
- 국내 및 국제 공급 체인에의 호주 기업 참여(AIP) 촉진

□ 호주의 EPBS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적용 대상 업종: 농업, 식품 포장, 식품 가공, 가스 공급, 광업, 제조업, 전력 공급, 리소스 처리(resource processing), 상수도
- 호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호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한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됨
 - 사업의 자본재 구입액이 1천만호주달러 이상이어야 함
- 관세 면제 대상 자본재
 - 기능단위: 블렌딩, 압축, 냉각(crushing), 절단, 추출(extracting), 압출(extruding), 필터링, 난방, 몰딩, 용접
 - 기계 장비: 압축기, 전기 장비, 광산 기계, 오프 하이웨이 덤프트럭, 펌프, 탱크, 밸브
 - 컨베이어: 유연한 운반시스템(flexible flow lines), 파이프라인, 파이프, 송전선, 그 외에 가스·액체·광물 또는 기타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운반체계
 - 스테인리스 자재

□ 호주는 FTA 체결 등을 이유로 2016년 5월 3일자로 EPBS를 폐지하였음

- 관세율 인하와 관세 양허체계의 확산으로 지원 대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폐지를 결정하였음
-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는데, 이로 인해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짐
 - EPBS하에서 관세가 감면되던 대부분의 자본재가 FTA 체결 국가로부터 수입되므로 EPBS가 폐지되어도 기업의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나. EU와 영국

- EU는 End-Use Relief를 통해 특정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EU가 아닌 제3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면제 또는 할인을 법률적 근거로 명시함
 - The Implementing Provisions to the Community Customs Code의 제2장의 291~292항에서 수입재화의 최종 사용(end-use) 목적에 따라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함⁹⁾
 - 부속서(Annex 39, 40, 41)에서 End-Use Relief의 목록을 명시함
 - Annex 39: Petroleum Products
 - Annex 40: Aircraft, Ships, Drilling, Production Platforms 관련 제품
 - Annex 41: 그 외 End-Use Relief가 적용되는 제품

- EU 국가들은 이에 따라 국가별로 End-Use Relief를 시행하는 규정을 둠

- 영국도 마찬가지로 End-Use Relief 제도를 통해 영국 및 EU 외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재화에 대한 수입관세를 완화함¹⁰⁾
 - End-Use Relief 적용 대상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됨
 - 특정 용도의 재화
 - 할당관세, 법률에 의한 단기 면세(temporary suspension of duty)
 - 특정 선박에서 사용되는 재화

- End-Use Relief가 적용되는 특정 용도의 재화는 다음과 같음¹¹⁾
 - 민간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 선박 건조 및 보수 자재 및 관련 물품

9) EUR-Lex,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3R2454:%20en:HTML#d1e10776-1-1>, 검색일자: 2021. 4. 19.;

EUR-Lex,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3R2454:%20en:HTML#d1e112-1-1>, 검색일자: 2021. 4. 7.

10) 영국 국세청(HMRC)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trade-tariff-end-use-relief-on-goods-used-for-a-prescribed-use/uk-trade-tariff-end-use-relief-on-goods-used-for-a-prescribed-use>, 검색일자: 2021. 4. 7.

11) 영국 국세청(HMRC)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can-pay-less-duty-if-your-goods-are-imported-into-end-use>, 검색일자: 2021. 4. 7.

- 물고기(fish)
 - 치즈
 - 자전거 부품
 - 군수장비
 - 기타: 카세인(casein), 탄화수소 오일 및 잔류물(hydrocarbon oils and residues), CCTV 감시 장치에 사용되는 보안 카메라 등
- 영국은 EU와 관세협력 협정(The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브렉시트(Brexit) 이전과 마찬가지로 영국과 EU 간의 무관세 통관을 유지함¹²⁾

12) EU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s://ec.europa.eu/info/relations-united-kingdom/eu-uk-trade-and-cooperation-agreement_en, 검색일자: 2021. 4. 7.

IV.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도입에 대한 조세감면효과 분석



IV.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도입에 대한 조세감면효과 분석

1. 모형을 통한 효과분석

- 본 소절에서는 모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및 법인세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 세수 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는 이들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구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타인자본의 활용은 이에 대한 이자의 비용처리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긍정적 영향
 - 반면 타인자본 활용은 경제환경 악화 시 부채상환으로 인한 자금 압박에 처할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

- 외국인투자기업의 선택과 이로부터 파생하는 세수 등은 경제 내에 존재하는 불확실성(uncertainty)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음
 -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 내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다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와 더불어 재무구조에 대한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정책의 효과를 분석
 - 특히,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고자 함

가. 기본 모형

- 매기 국내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순소득의 현금흐름을 극대화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고려¹³⁾
 -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은 모두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으로 구성된다고 가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은 모두 수입에 의해 조달된다고 가정

- t 기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은 축적된 자본량과 확률적으로 실현되는 외생적 충격(exogenous shock)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
 - k 는 외국인투자기업의 t 기 자본량을 나타냄($k \geq 0$)
 - 외국인투자기업이 t 기에 직면한 외생적 충격은 $z \in Z$ 로 표기($z > 0$)
 - Z 는 매기 t 에 실현 가능한 외생적 충격 z 의 집합을 의미
 - 모든 실현 가능한 z 에 대해 $0 < \underline{z} \leq z \leq \bar{z}$ 를 만족하는 \underline{z} 와 \bar{z} 가 존재함
 - $\pi(k, z)$: t 기에 자본량이 k 이고 외생적 충격 z 에 직면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

- 이후 고려하는 문제들이 적절한 해(solution)를 갖도록 하기 위해 $\pi(k, z)$ 에 대해 다음을 가정
 - $\pi(k, z)$ 는 k 에 대해 미분 가능(differentiable)하며 강증가(strictly increasing)하고 강오목(strictly concave)한 함수임
 - 이는 자본량이 증가할수록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이 증가하고 한계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
 - $\pi(k, z)$ 는 z 에 대해 미분 가능(differentiable)하며 강증가(strictly increasing)하는 함수
 - 이는 외생적 충격 z 가 클수록 외국인투자기업이 보다 유리한 경제환경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
 - 모든 $z \in Z$ 에 대해 $\pi(0, z) = 0$ 을 만족

13) 여기서 설명하는 모형은 Hennessy and Whited(2005)가 제시한 것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한 것이며, 조명환(2012)은 유사한 모형 아래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 있음

- 이는 자본량이 0인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환경과 관계 없이 항상 0의 이윤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
- 모든 $z \in Z$ 에 대해, 다음을 만족함

$$\lim_{k \rightarrow 0} \frac{\partial \pi(k, z)}{\partial k} = \infty, \quad \lim_{k \rightarrow \infty} \frac{\partial \pi(k, z)}{\partial k} = 0 \quad (1)$$

- 이는 경제환경과 관계없이 외국인투자기업이 항상 어느 정도의 자본량 k 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

□ 외생적 충격 z 는 전이함수(transition function) P 를 따르는 마코프 과정(Markov process)을 따름

- $P(z, z')$: t 기의 외생적 충격이 z 로 실현되었음을 전제하였을 때 $t+1$ 기에 외생적 충격 z' 이 실현될 확률분포(distribution function)임

□ 전이함수 P 에 대해서는 다음을 가정¹⁴⁾

- 모든 유계연속함수(bounded continuous function) $f: Z \rightarrow \mathbb{R}$ 에 대해, $Tf(z) = \int f(z')P(z, dz')$ 로 정의되는 함수 $Tf: Z \rightarrow \mathbb{R}$ 도 유계연속함수임
- 모든 $z \in Z$ 에 대해 실현될 확률이 0보다 큰 $z' \in Z$ 은 존재하지 않음
- t 기에 외생적 충격 z 에 직면한 자본량이 k 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이윤 $\Pi(k, z)$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Pi(k, z) = \pi(k, z) - rk - \delta k \quad (2)$$

- r 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비용을 나타냄
 - 자본비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의 투자 1단위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자금조달비용을 의미
- δ 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에 대한 경제적 감가상각률(economic depreciation rate)을 의미

14) 전이함수 P 에 대한 이러한 특성을 펠러 특성(Feller property)이라고 함

-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국내 차입을 통해 조달할 수 있음
 - b 는 t 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량을 의미
 - i 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율을 의미

- 분석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은 매기에 발생하는 차입을 다음 기에 상환해야 한다고 가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t 기 부채가 b 라 하면, 이로 인한 현금 유출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t-1$ 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이 t 기에 소요하는 부채 b 에 대한 대출은 $t-1$ 기에 이루어져 b 만큼의 현금유입(cash inflow)이 발생
 - t 기: 부채 b 의 상환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1+i)b$ 만큼의 현금유출(cash outflow)이 발생

- t 기 부채가 b 인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상 이윤 $\Pi_A(k,b,z)$ 는 경제적 수입에서 회계상 이자비용과 자본에 대한 회계상 감가상각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남

$$\Pi_A(k,b,z) = \pi(k,z) - ib - \theta k \quad (3)$$

- ib 는 부채가 b 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출하는 회계상 이자비용
- θ 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회계상 감가상각률을 표시
- 자본량이 k 인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상 감가상각은 θk 로 나타남

- 매기 외국인투자기업은 회계상 이윤 $\Pi_A(k,b,z)$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 (corporate tax)를 납부해야 함

$$T_C(k,b,z) = \tau_C \cdot \Phi_{\Pi_A}(k,b,z) \cdot \Pi_A(k,b,z) \quad (4)$$

- τ_C 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의미

- $\Phi_{\Pi_A}(k,b,z)$ 는 $\Pi_A(k,b,z) > 0$ 일 때 1의 값을 부여하고 $\Pi_A(k,b,z) \leq 0$ 일 때 0의 값을 부여하는 표지함수(indicator function)임
- 즉, 외국인투자기업은 양(+의 회계상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τ_C 의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

□ t 기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납부 후 순이익은 다음과 같음

$$N\Pi(k,b,z) = \Pi(k,z) - T_C(k,b,z) \quad (5)$$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납부 후 순이익은 경제적 이윤에서 법인세 납부액을 차감한 것

□ 외국인투자기업은 매기에 법인세 납부후 순이익 $\Pi(k,z) - T_C(k,b,z)$ 보다 상환해야 하는 부채 및 이자 $(1+i)b$ 가 더 큰 경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해야 함

- 즉,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부채상환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매각해야 함

$$D(k,b,z) = \frac{1}{q} \cdot \Phi_D(k,b,z) \cdot ((1+i)b - (\Pi(k,z) - T_C(k,b,z))) \quad (6)$$

- $\Phi_D(k,b,z)$ 는 $(1+i)b > \Pi(k,z) - T_C(k,b,z)$ 일 때 1을 부여하고 $(1+i)b \leq \Pi(k,z) - T_C(k,b,z)$ 일 때 0을 부여하는 표지함수임
- q 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부채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때 가격임
 - q 는 $0 < q < 1$ 를 만족한다고 가정
 -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부채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때는 정상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이를 매각한다는 것을 의미함
- $D(k,b,z)$ 만큼 매각된 자산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다음 기 자본량의 감소로 이어짐

- t 기에 부채가 b 이고 자본이 k 인 외국인투자기업이 z 로 실현된 외생적 충격에 직면하고 있고 $t+1$ 기에 k' 의 자본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기업의 순투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됨

$$I(k, b, k', z) = k' - k(1 - \delta) + D(k, b, z) \quad (7)$$

- $I(k, b, k', z)$ 는 외국인투자기업이 t 기에 구입하는 자본량을 의미
- $I(k, b, k', z) < 0$ 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부채상환이 아닌 다른 이유로 현재 기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한다는 의미임

- 외국인투자기업은 매기 투자를 통해 구입하는 자본에 대해 τ_V 의 세율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다음과 같음

$$T_V(k, b, z) = \tau_V \cdot \Phi_I(k, b, k', z) \cdot I(k, b, k', z) \quad (8)$$

- 여기서 $\Phi_I(k, b, k', z)$ 는 $I(k, b, k', z) > 0$ 일 때 1을 부여하고 $I(k, b, k', z) \leq 0$ 일 때 0을 부여하는 표지함수임

- 매기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흐름(cash flow)은 현재 기의 자본량 및 부채량(k, b)과 다음 기의 자본량 및 부채량(k', b')과 현재 기의 외생적 충격 z 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됨

$$e(k, b, k', b', z) = (1 - \Phi_D(k, b, z))(II(k, z) - T_C(k, b, z) - (1 + i)b) + b' - I(k, b, k', z) - T_V(k, b, z) \quad (9)$$

- 식 (9) 우변의 $(II(k, z) - T_C(k, b, z) - (1 + i)b)$ 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비롯된 현금흐름을 의미함
 -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이윤에서 법인세, 부채상환 및 이자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이 음(-)이 되는 경우 이것으로부터 비롯된 현금흐름은 0임
- 식 (9) 우변의 b' 은 현재 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부채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으로 양(+)의 현금흐름을 유발
- 식 (9) 우변의 $I(k, b, k', z)$ 는 현재 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유발
- 식 (9) 우변의 $T_V(k, b, z)$ 는 현재 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로 음(-)의 현금흐름을 유발

□ 식 (7)과 (8)을 식 (9)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이 도출됨

$$\begin{aligned}
 & e(k, b, k', b', z) && (10) \\
 & = \left(1 + \frac{1 - q + \tau_V \Phi_I(k, b, k', z)}{q} \Phi_D(k, b, z) \right) (\Pi(k, z) - T_C(k, b, z) - (1 + i)b) \\
 & \quad + b' - (1 + \tau_V \Phi_I(k, b, k', z))(k' - k(1 - \delta))
 \end{aligned}$$

□ 주어진 가정 아래 다음의 특성을 적용하면, 식 (10)의 함수 $e(k, b, k', b', z)$ 는 (k, b) 에 대해 오목함수(concave function)임을 보일 수 있음

- 함수 $f(x)$ 가 오목함수이고 함수 $\Phi_f(x)$ 가 $f(x) < 0$ 일 때 1을 부여하고 $f(x) \geq 0$ 일 때 0을 부여하는 표지함수라면, 함수 $f(x)$ 와 $\Phi_f(x)$ 에 대해 $h(x) = \Phi_f(x) \cdot f(x)$ 로 정의된 함수 $h(x)$ 는 오목함수임
- 오목함수 $f(x)$ 와 오목함수 $g(x)$ 에 대해 정의된 함수 $h(x) = f(x) + g(x)$ 는 오목함수임

□ 식 (10)에 정의된 함수 $e(k, b, k', b', z)$ 는 연속이고 거의 전 영역에서 미분 가능(almost everywhere differentiable)함

- $e(k, b, k', b', z)$ 는 $\Pi_A(k, b, z) = 0$ 또는 $(1 + i)b - (\Pi(k, z) - T_C(k, b, z)) = 0$ 또는 $(1 + i)b - (\Pi(k, z) - T_C(k, b, z)) = 0$ 을 만족하는 (k, b, k', b', z) 에서만 미분가능하지 않음

□ 외국인투자기업은 식 (9)와 같이 정의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비용 r 을 이 기업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discount rate)로 적용
- 따라서 $t=0$ 기에 (k_0, b_0, z_0) 가 주어져 있을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됨

$$\max_{(k_t, b_t)_{t=1}^{\infty}} E \left[\sum_{t=0}^{\infty} \left(\frac{1}{1+r} \right)^t e(k_t, b_t, k_{t+1}, b_{t+1}, z_t) \right] \quad (11)$$

- 여기서 $E[\cdot]$ 는 0기의 외생적 충격이 z_0 로 주어져 있음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댓값임
 - 식 (11)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업이 선택하는 (k_t, b_t) 는 t 기 이전의 (k, b, z) 에 의존하는 함수로 나타날 것임
-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기술에 대한 적절한 가정 아래 외국인투자기업이 항상 자신의 자산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정
- 이러한 가정은 식 (11)의 극대화 문제에서 충분히 큰 $\bar{k} > 0$ 와 $\bar{b} > 0$ 가 존재하여 매기 외국인투자기업이 선택하는 k_t 와 b_t 가 $0 \leq k_t \leq \bar{k}$ 와 $0 \leq b_t \leq \bar{b}$ 를 만족하도록 함
 - 이러한 가정은 식 (11)의 극대화 문제가 적절한 해를 갖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임
- 식 (11)을 극대화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매기 t 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t-1$ 기에 선택한 자본량 k 및 부채 b 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충격 z 를 관찰하고, 후속 기간에 이 기업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t+1$ 기의 자본량 k' 과 부채 b' 을 선택
 -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와 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면, 이 기업이 t 기 이후의 후속 기간에 누리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이 기업이 선택하는 자본량 k' 및 부채 b' 과 다음 기에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외생적 충격 z' 에 의해 결정

- 외국인투자기업이 위와 같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 기업이 t 기에 처한 상태(state)는 (k, b, z)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다음 기의 상태 (k', b', z') 이 결정됨
 - (k', b') 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선택에 의해 결정
 - z' 은 전기에 z 가 실현되었음을 조건으로 하는 확률분포에 따라 결정
- 위와 같은 의사결정을 고려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선택은 어떤 함수 $V(k, b, z)$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임

$$V(k, b, z) = \max_{(k', b')} \left\{ e(k, b, k', b', z) + \frac{1}{1+r} \int V(k', b', z') P(z, dz') \right\} \quad (12)$$

- 이를 식 (11)에 대응되는 함수방정식(functional equation)이라 함
- $V(k, b, z)$ 는 현재 기의 상태가 (k, b, z) 로 주어져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극대화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
- 식 (11)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매기 자신의 상태가 (k, b, z) 로 주어져 있을 때, 식 (12)의 극대화 문제를 푸는 (k', b') 을 선택
- 식 (11)의 극대화 문제를 적절한 함수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식 (12)를 만족하는 함수 $V(k, b, z)$ 가 존재하고 이로부터 정의된 극대화 문제가 적절한 해를 가져야 함
- 주어진 가정하에 식 (12)를 만족하는 함수 $V(k, b, z)$ 에 대해 다음이 성립하는 것을 보일 수 있음¹⁵⁾
 - 식 (12)를 만족하는 함수 $V(k, b, z)$ 가 유일하게 존재함
 - 모든 $z \in Z$ 에 대해 $V(\cdot, z)$ 는 오목함수임
- $e(k, b, k', b', z)$ 가 (k, b, k', b', z) 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다음을 도출할 수 있음

$$\frac{\partial e(k, b, k', b', z)}{\partial k} = \left(1 + \frac{1-q + \tau_V \Phi_I(k, b, k', z)}{q} \Phi_D(k, b, z) \right) \quad (13)$$

1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tockey et al.(1989)를 참조

$$\begin{aligned}
& \times (\pi_1(k, z) - r - \delta - \tau_C \Phi_{II_A}(k, b, z)(\pi_1(k, z) - \theta)) \\
& + (1 - \delta)(1 + \tau_V \Phi_I(k, b, k', z)) \\
& \equiv \frac{\partial \tilde{e}(k, b, k', z)}{\partial k} \\
\frac{\partial e(k, b, k', b', z)}{\partial b} &= - \left(1 + \frac{1 - q + \tau_V \Phi_I(k, b, k', z)}{q} \Phi_D(k, b, z) \right) \\
& \times ((1 + i) - \tau_C \Phi_{II_A}(k, b, z))
\end{aligned} \tag{14}$$

$$\equiv \frac{\partial \tilde{e}(k, b, k', z)}{\partial b}$$

$$\frac{\partial e(k, b, k', b', z)}{\partial k'} = - (1 + \tau_V \Phi_I(k, b, k', z)) \tag{15}$$

$$\frac{\partial e(k, b, k', b', z)}{\partial b'} = 1 \tag{16}$$

□ 식 (12)의 극대화 문제의 제1계 필요조건(the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은 다음과 같음:

$$\frac{\partial e(k, b, k', b', z)}{\partial k'} + \frac{1}{1+r} \int \frac{\partial V(k', b', z')}{\partial k'} P(z, dz') = 0 \tag{17}$$

$$\frac{\partial e(k, b, k', b', z)}{\partial b'} + \frac{1}{1+r} \int \frac{\partial V(k', b', z')}{\partial b'} P(z, dz') = 0 \tag{18}$$

□ 식 (12)의 극대화 문제에 포락선 정리(envelope theorem)를 적용하면 다음을 얻음

$$\frac{\partial V(k, b, z)}{\partial k} = \frac{\partial \tilde{e}(k, b, k', z)}{\partial k} \tag{19}$$

$$\frac{\partial V(k, b, z)}{\partial b} = \frac{\partial \tilde{e}(k, b, k', z)}{\partial b} \tag{20}$$

□ 식 (13)에서 (16)으로부터 식 (12)의 극대화 문제의 제1계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음

$$-(1+\tau_V)\Phi_I(k,b,k',z) + \frac{1}{1+r} \int \frac{\partial \tilde{e}(k',b',k'',z)}{\partial k'} P(z,dz') = 0 \quad (21)$$

$$1 + \frac{1}{1+r} \int \frac{\partial \tilde{e}(k',b',k'',z)}{\partial b'} P(z,dz') = 0 \quad (22)$$

-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매기 (k,b,z) 가 주어져 있을 때, 적절한 k'' 에 대해 식 (21)과 (22)를 만족하는 (k',b') 를 선택할 것임
- 식 (21)과 (22)에서 (k,b) 는 $\Phi_I(k,b,k',z)$ 를 통해 k' 과 b' 에 영향을 미침
 - 현재 기에 (k,b) 가 $I(k,b,k',z) > 0$ 을 만족하도록 주어져 있다면, 식 (21)과 (22)를 만족하는 k' 과 b' 은 z 에 의존
- 식 (21)과 (22)은 폐쇄형 해(closed form solution)를 가지지 않으므로 적절한 모수를 설정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연산을 통해 해의 근사치를 찾고자 함

나. 함수 및 모수 설정

- 본 소절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모형을 바탕으로 수치적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함수형태와 모수들을 어떻게 설정하였는가를 설명함
- 외생적 충격 z 가 실현되는 집합 Z 가 연속체(continuum)인 경우 분석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Tauchen(1986)은 상태 변수(state variable)의 집합 Z 를 이산적(discrete)으로 두고 이에 대해 적절한 전이행렬을 구성하여 연산을 수행하면, 연속체로 정의된 Z 위에서의 해를 비교적 잘 근사할 수 있음을 보였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집합 Z 를 이산적으로 놓고 컴퓨터를 활용한 수치분석을 시도함
- Hennessy and Whited(2005)를 따라 $\ln(z_t)$ 가 다음과 같은 AR(1) 과정을 따라 실현된다고 설정함

$$\ln(z_{t+1}) = \rho \ln(z_t) + \varepsilon_{t+1} \quad (23)$$

- ε_{t+1} 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2 인 정규분포를 따름
 - ρ 는 $0 < \rho < 1$ 을 만족하며 이는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 $\ln(z_t)$ 가 정상성(stationarity)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
 - ρ 가 $0 < \rho < 1$ 을 만족하면 $\ln(z_t)$ 의 평균이 0으로 일정하게 나타남
 - 식 (18-1)은 z_t 가 주어진 상태에서 z_{t+1} 의 분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가정하는 것임
- ρ 는 Gomes(2001)의 추정 결과를 빌려 $\rho = 0.62$ 로 하였음
- Gomes(2001)은 기업이 외부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들의 투자행태를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
 - $\rho = 0.62$ 는 Hennessy and Whited(2005)의 연구에서도 활용되었음
- σ 는 수치적 분석의 해가 내부해를 가지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나타나도록 설정하였음
- σ 은 기업이 처한 경제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음
 - 즉, σ 가 크면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이 더 크고, σ 가 낮으면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이 더 낮음
 - 불확실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하여 σ 는 0.20과 0.30을 선택하였음
- 경제의 외생적 충격 z 의 집합 Z 는 특정 구간 위에서 일정 간격을 지닌 유한 개의 점들의 집합으로 구성
- 외생적 충격 z 의 전이함수(transition function) P 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 $z, z' \in Z$ 에 대해,

$$P(z, z') = \frac{f(z'; \rho \ln(z), \sigma^2)}{\sum_{z' \in Z} f(z'; \rho \ln(z), \sigma^2)} \quad (24)$$

- $f(z'; \rho \ln(z), \sigma^2)$ 은 $\ln(z')$ 의 평균이 $\rho \ln(z)$ 이고 분산이 σ^2 인 로그-정규분포함수(log-normal distribution function)임
- 식 (24)와 같이 정의된 전이함수 P 는 연속체로 정의된 Z 위에서 식 (23)을 따라 실현되는 z_t 의 분포를 이산적으로 주어져 있는 Z 위에서의 분포로 근사시킨 것임

-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함수 $\pi(k, z)$ 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 $\alpha \in (0, 1)$ 에 대해,

$$\pi(k, z) = zk^\alpha \quad (25)$$

- α 는 Hennessy and Whited(2005)가 Cooper and Ejarque(2001)의 이윤함수 추정결과로부터 빌려 사용한 $\alpha = 0.689$ 로 설정
- 이와 같이 정의된 $\pi(k, z)$ 는 식 (1)의 가정을 모두 만족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τ_C 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다수가 적용받는 세율인 22%에 지방세를 포함하여 적용
- 즉, τ_C 는 24.2%로 설정

-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세율 τ_V 는 다음의 경우들을 고려
 - 일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
 - 관세 및 부가가치세 세율은 대다수 기계류에 적용되는 관세율 8%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τ_V 는 18.8%로 설정
 - 우대 외국인투자기업(우대기업):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 관세만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는 부과되는 것을 고려하여 τ_V 는 부가가치세율 10%로 설정
 - 특별우대 외국인투자기업(특별우대기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 등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τ_V 는 0%를 적용
 - 일반기업, 우대기업, 특별우대기업의 순으로 법인세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의 혜택이 커진다고 말할 수 있음

-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효과를 보기 위해 우대 및 특별우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없는 경우도 고려
-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 압박에 처해 자산을 매각할 때의 가격 q 는 Hennessy and Whited(2005)의 모의실험에서 사용한 0.75로 설정
 -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 압박에 처해 자신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자산 가치의 75% 정도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임
 - Ramey and Shapiro(2001)는 냉전 이후 미국 항공산업이 위축될 때 매각되는 자산의 할인율을 추정하였는데, 여기서 사용된 $q=0.75$ 는 이들의 추정 범위에 포함됨
- 경제적 감가상각률 δ 는 현진권·표학길(1997)이 추정한 17.6%를 적용
 - 현진권·표학길(1997)은 업종별, 자산의 유형별 감가상각률을 추정하였으며, 17.6%는 전 업종의 모든 유형의 자산에 대해 추정한 감가상각률임
- 회계상 감가상각률 θ 는 내용연수 10년에 정률법을 적용한 감가상각률 25.9%를 적용
 - 내용연수 10년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섬유제품 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에 사용되는 자산에 적용되는 것임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비용 r 은 2021년 3월 31일 기준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 1.74%를 적용
 - r 은 투자의 기회비용에 해당하며 균형에서 차익거래가 불가능하다면 외국인투자자의 세후수익률과 같아짐
 - 투자의 기회비용으로 국채수익률이 흔히 사용되며, 자본의 해외유출 규모가 큰 미국의 국채수익률 중 하나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의 기회비용으로 설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율 i 는 2021년 3월 31일 기준 회사채(AA-, 3년)의 이자율인 2.06%를 적용

□ <표 IV-1>은 한계유효세율과 평균유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해 설정한 모수들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음

<표 IV-1> 모수 설정

구분		일반기업	우대기업	특별우대기업
전이함수	ρ	0.62		
	σ	0.20 / 0.30		
생산함수	α	0.689		
법인세율(τ_C)		0.24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세율(τ_V)		0.188	감면 시행: 0.100 감면 폐지: 0.188	감면 시행: 0.000 감면 폐지: 0.188
자금압박 시 자산매각 가격(q)		0.75		
회계상 감가상각률(θ)		0.259		
경제적 감가상각률(δ)		0.176		
자본비용(r)		0.0174		
부채에 대한 이자율(i)		0.0206		

자료: 저자 작성

다. 조세감면제도의 효과

□ <표 IV-2>부터 <표 IV-4>는 앞에서 설정한 정책변수 및 모수에 $\sigma=0.20$ 을 적용하여 모의실험을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주어진 모형 아래 외국인투자기업이 선택하는 다음 기의 자본량과 부채 (k', b')은 현재 기의 외생적 충격 z 에만 영향을 받음
- <표 IV-2>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 세율 τ_V 가 18.8%인 경우, <표 IV-3>은 부가가치세 및 관세 세율 τ_V 가 10.0%인 경우, <표 IV-4>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 세율 τ_V 가 0.0%인 경우의 결과를 보여줌

<표 IV-2> 모의실험 결과($\tau_V=18.8\%$, $\sigma=0.20$)

z	k'	b'	b'/k' (%)	$EP(k', b', z)$	$TR(k', b', z)$
0.4	0.5656	0.0860	15.1973	0.2810	0.2016
0.5	0.8825	0.1343	15.2175	0.4384	0.2590
0.6	1.2693	0.1938	15.2643	0.6305	0.3171
0.7	1.7259	0.2627	15.2195	0.8573	0.3761
0.8	2.2520	0.3434	15.2500	1.1186	0.4364
0.9	2.8465	0.4346	15.2684	1.4139	0.4982
1.0	3.5071	0.5355	15.2683	1.7421	0.5619
1.1	4.2288	0.6469	15.2980	2.1005	0.6273
1.2	5.0034	0.7660	15.3098	2.4853	0.6942
1.3	5.8196	0.8960	15.3971	2.8907	0.7618
1.4	6.6632	1.0310	15.4731	3.3098	0.8295
1.5	7.5189	1.1747	15.6233	3.7348	0.8964
1.6	8.3716	1.3199	15.7663	4.1583	0.9621

자료: 저자 작성

<표 IV-3> 모의실험 결과($\tau_V=10.0\%$, $\sigma=0.20$)

z	k'	b'	b'/k' (%)	$EP(k', b', z)$	$TR(k', b', z)$
0.4	0.6608	0.0945	14.2968	0.3067	0.1521
0.5	1.0309	0.1470	14.2613	0.4785	0.2028
0.6	1.4828	0.2115	14.2666	0.6883	0.2573
0.7	2.0162	0.2886	14.3136	0.9358	0.3157
0.8	2.6308	0.3764	14.3094	1.2211	0.3781
0.9	3.3253	0.4755	14.2998	1.5435	0.4448
1.0	4.0970	0.5869	14.3251	1.9016	0.5157
1.1	4.9401	0.7080	14.3317	2.2929	0.5906
1.2	5.8450	0.8398	14.3675	2.7130	0.6689
1.3	6.7985	0.9812	14.4329	3.1555	0.7497
1.4	7.7840	1.1310	14.5294	3.6129	0.8318
1.5	8.7837	1.2875	14.6581	4.0769	0.9140
1.6	9.7799	1.4492	14.8185	4.5393	0.9952

자료: 저자 작성

<표 IV-4> 모의실험 결과($\tau_V=0.0\%$, $\sigma=0.20$)

z	k'	b'	b'/k' (%)	$EP(k',b',z)$	$TR(k',b',z)$
0.4	0.7961	0.1061	13.3281	0.3400	0.0691
0.5	1.2421	0.1651	13.2920	0.5305	0.1078
0.6	1.7865	0.2376	13.2996	0.7631	0.1551
0.7	2.4292	0.3243	13.3495	1.0376	0.2109
0.8	3.1695	0.4216	13.3006	1.3538	0.2752
0.9	4.0064	0.5349	13.3517	1.7113	0.3479
1.0	4.9361	0.6584	13.3392	2.1084	0.4286
1.1	5.9518	0.7950	13.3574	2.5422	0.5168
1.2	7.0421	0.9439	13.4034	3.0079	0.6114
1.3	8.1909	1.1039	13.4778	3.4986	0.7111
1.4	9.3782	1.2703	13.5450	4.0057	0.8142
1.5	10.5826	1.4479	13.6816	4.5201	0.9187
1.6	11.7827	1.6277	13.8141	5.0327	1.0228

자료: 저자 작성

- <표 IV-2>부터 <표 IV-4>에서 z 가 증가한다는 것은 현재 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보다 긍정적인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τ_V 가 어떻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z 가 증가할수록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량 k' 과 부채 b' 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이는 기업이 보다 긍정적인 경제환경에 직면할수록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차입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τ_V 가 어떻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z 가 증가할수록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비율 b'/k' 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기업의 부채 증가는 이에 대한 이자의 비용처리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 효과
 - 외국인투자기업이 보다 긍정적인 경제환경에 처할수록 더 높은 이윤을 누릴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법인세가 미치는 역할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법인세의 역할 증가는 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부채의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

□ τ_V 가 어떻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z 가 증가할수록 다음 기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이윤의 기댓값 $EP(k', b', z)$ 는 증가함

- 외생적 충격 z 가 주어져 있을 때 $EP(k', b', z)$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begin{aligned} EP(k', b', z) &= \int \Pi(k', z') P(z, dz') & (26) \\ &= \int (\pi(k', z') - rk' - \delta k') P(z, dz') \end{aligned}$$

- 보다 긍정적인 경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자명함

□ τ_V 가 어떻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z 가 증가할수록 다음 기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세수의 기댓값 $TR(k', b', z)$ 은 증가함

- 외생적 충격 z 가 주어져 있을 때 $TR(k', b', z)$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TR(k', b', z) = \int T_C(k', b', z') + T_V(k', b', z') P(z, dz') \quad (27)$$

- 이는 경제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 증가와 투자 증가에 기인하는 것임

□ <표 IV-2>부터 <표 IV-4>에서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세율 τ_V 가 낮아질수록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량 k' 과 부채 b' 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부담이 감소할수록 기업은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생산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

- <표 IV-2>부터 <표 IV-4>에서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세율 τ_V 가 낮아질수록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비율 b'/k' 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남
 -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세율 τ_V 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구입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따라서, τ_V 의 감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 증가보다 자본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기업의 부채비율 b'/k' 은 하락

- <표 IV-2>부터 <표 IV-4>에서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세율 τ_V 가 낮아질수록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이윤의 기댓값 $EP(k', b', z)$ 은 증가함
 - 기업의 세부담 감소가 기업의 경제적 이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관적으로 자명함

- <표 IV-2>부터 <표 IV-4>에서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세율 τ_V 가 낮아질수록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의 기댓값 $TR(k', b', z)$ 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임
 - 외부적 충격 z 가 낮을 때, $TR(k', b', z)$ 은 감소하는 경향
 - 외부적 충격 z 가 높을 때, $TR(k', b', z)$ 은 증가하는 경향
 - τ_V 의 하락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 τ_V 의 하락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이 효과는 z 가 높을 때 더 크게 나타남
 - 외부적 충격 z 가 높을 때, τ_V 의 하락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보다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날 수 있음

- <표 IV-5>는 $\sigma=0.20$ 을 적용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및 관세 세율 τ_V 의 하락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행태 및 경제적 이윤과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고 있음

<표 IV-5> τ_V 하락에 따른 기업의 행태 변화($\sigma=0.20$)

구분	변화 방향	
k'	증가(+)	
b'	증가(+)	
b'/k'	감소(-)	
$EP(k', b', z)$	증가(+)	
$TR(k', b', z)$	z 가 낮을 때	감소(-)
	z 가 높을 때	증가(+)

자료: 저자 작성

- <표 IV-6>부터 <표 IV-8>은 앞에서 설정한 정책변수 및 모수에 $\sigma=0.30$ 를 적용하여 모의실험을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앞서서와 비교하여 이는 경제 내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표 IV-6>은 부가가치세 및 관세 세율 τ_V 가 18.8%인 경우, <표 IV-7>은 부가가치세 및 관세 세율 τ_V 가 10.0%인 경우, <표 IV-8>은 부가가치세 및 관세 세율 τ_V 가 0.0%인 경우의 결과를 보여줌

<표 IV-6> 모의실험 결과($\tau_V=18.8\%$, $\sigma=0.30$)

z	k'	b'	b'/k' (%)	$EP(k', b', z)$	$TR(k', b', z)$
0.4	0.6128	0.0479	7.8144	0.3045	0.2404
0.5	0.9547	0.0730	7.6488	0.4744	0.3058
0.6	1.3693	0.1046	7.6374	0.6804	0.3695
0.7	1.8512	0.1416	7.6502	0.9198	0.4309
0.8	2.3918	0.1835	7.6718	1.1885	0.4895
0.9	2.9798	0.2325	7.8025	1.4806	0.5452
1.0	3.6020	0.2853	7.9211	1.7898	0.5979
1.1	4.2451	0.3408	8.0280	2.1093	0.6477
1.2	4.8967	0.4022	8.2132	2.4330	0.6947
1.3	5.5460	0.4670	8.4200	2.7556	0.7392
1.4	6.1843	0.5345	8.6424	3.0727	0.7814
1.5	6.8050	0.6040	8.8751	3.3810	0.8219
1.6	7.4035	0.6747	9.1133	3.6783	0.8609

자료: 저자 작성

<표 IV-7> 모의실험 결과($\tau_V=10.0\%$, $\sigma=0.30$)

z	k'	b'	b'/k' (%)	$EP(k', b', z)$	$TR(k', b', z)$
0.4	0.7157	0.0519	7.2533	0.3323	0.1786
0.5	1.1150	0.0785	7.0422	0.5178	0.2355
0.6	1.5993	0.1129	7.0575	0.7426	0.2949
0.7	2.1621	0.1534	7.0938	1.0040	0.3560
0.8	2.7936	0.1994	7.1370	1.2972	0.4182
0.9	3.4804	0.2517	7.2329	1.6161	0.4809
1.0	4.2072	0.3081	7.3227	1.9535	0.5433
1.1	4.9584	0.3717	7.4962	2.3023	0.6048
1.2	5.7195	0.4377	7.6528	2.6557	0.6651
1.3	6.4780	0.5074	7.8332	3.0078	0.7236
1.4	7.2237	0.5831	8.0716	3.3539	0.7803
1.5	7.9488	0.6582	8.2802	3.6905	0.8349
1.6	8.6481	0.7380	8.5341	4.0151	0.8876

자료: 저자 작성

<표 IV-8> 모의실험 결과($\tau_V=0.0\%$, $\sigma=0.30$)

z	k'	b'	b'/k' (%)	$EP(k', b', z)$	$TR(k', b', z)$
0.4	0.8619	0.0575	6.6698	0.3684	0.0752
0.5	1.3429	0.0673	5.0098	0.5739	0.1173
0.6	1.9261	0.1094	5.6782	0.8232	0.1681
0.7	2.6040	0.1714	6.5817	1.1129	0.2272
0.8	3.3645	0.2230	6.6269	1.4380	0.2935
0.9	4.1917	0.2819	6.7245	1.7914	0.3656
1.0	5.0671	0.3455	6.8186	2.1655	0.4420
1.1	5.9720	0.4151	6.9508	2.5522	0.5208
1.2	6.8889	0.4900	7.1134	2.9439	0.6007
1.3	7.8027	0.5696	7.2996	3.3343	0.6803
1.4	8.7010	0.6529	7.5033	3.7181	0.7585
1.5	9.5747	0.7426	7.7562	4.0913	0.8345
1.6	10.4172	0.8311	7.9784	4.4512	0.9077

자료: 저자 작성

- $\sigma=0.30$ 을 적용하였을 때 현재 기의 외생적 충격 z 가 어떻게 주어졌는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량, 부채, 부채비중, 경제적 이윤, 세수 등의 변화 방향은 $\sigma=0.20$ 를 적용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나타남
 - z 가 증가할수록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량 k' 과 부채 b' 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z 가 증가할수록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비율 b'/k' 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z 가 증가할수록 다음 기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이윤의 기댓값 $EP(k',b',z)$ 은 증가함
 - z 가 증가할수록 다음 기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세수의 기댓값 $TR(k',b',z)$ 은 증가함

- $\sigma=0.30$ 를 적용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세율 τ_V 하락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량, 부채, 부채비중, 경제적 이윤,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은 $\sigma=0.25$ 를 적용하였을 때와 그 방향이 동일하게 나타남
 - τ_V 가 낮아질수록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량 k' 과 부채 b' 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τ_V 가 낮아질수록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비율 b'/k' 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남
 - τ_V 가 낮아질수록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이윤의 기댓값 $EP(k',b',z)$ 은 증가함
 - τ_V 가 낮아질수록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의 기댓값 $TR(k',b',z)$ 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임
 - 외부적 충격 z 가 낮을 때, $TR(k',b',z)$ 은 감소하는 경향
 - 외부적 충격 z 가 높을 때, $TR(k',b',z)$ 은 증가하는 경향

- <표 IV-9>는 $\sigma=0.30$ 를 적용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및 관세 세율 τ_V 하락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행태 및 경제적 이윤과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고 있음

<표 IV-9> τ_V 하락에 따른 기업의 행태 변화($\sigma=0.30$)

구분		변화 방향
k'		증가(+)
b'		증가(+)
b'/k'		감소(-)
$EP(k', b', z)$		증가(+)
$TR(k', b', z)$	z 가 낮을 때	감소(-)
	z 가 높을 때	증가(+)

자료: 저자 작성

□ <표 IV-10>부터 <표 IV-12>는 σ 가 0.20에서 0.30으로 증가하였을 때 외국인투자 기업의 자본량, 부채, 부채비율, 경제적 이윤, 세수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줌

○ σ 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IV-10> σ 의 변화($\sigma=0.20 \rightarrow 0.30$)에 따른 변화($\tau_V=18.8\%$)

z	k'	b'	b'/k' (%)	$EP(k', b', z)$	$TR(k', b', z)$
0.4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0.5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0.6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0.7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0.8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0.9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1.0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1.1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1.2	감소	감소	감소	감소	증가
1.3	감소	감소	감소	감소	감소
1.4	감소	감소	감소	감소	감소
1.5	감소	감소	감소	감소	감소
1.6	감소	감소	감소	감소	감소

자료: 저자 작성

<표 IV-11> σ 의 변화($\sigma=0.20 \rightarrow 0.30$)에 따른 변화($\tau_V=10.0\%$)

z	k'	b'	$b'/k'(\%)$	$EP(k',b',z)$	$TR(k',b',z)$
0.4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0.5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0.6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0.7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0.8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0.9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1.0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1.1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1.2	감소	감소	감소	감소	감소
1.3	감소	감소	감소	감소	감소
1.4	감소	감소	감소	감소	감소
1.5	감소	감소	감소	감소	감소
1.6	감소	감소	감소	감소	감소

자료: 저자 작성

<표 IV-12> σ 의 변화($\sigma=0.20 \rightarrow 0.30$)에 따른 변화($\tau_V=0.0\%$)

z	k'	b'	$b'/k'(\%)$	$EP(k',b',z)$	$TR(k',b',z)$
0.4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0.5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0.6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0.7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0.8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0.9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1.0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1.1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1.2	감소	감소	감소	감소	감소
1.3	감소	감소	감소	감소	감소
1.4	감소	감소	감소	감소	감소
1.5	감소	감소	감소	감소	감소
1.6	감소	감소	감소	감소	감소

자료: 저자 작성

-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을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량 k' 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임
 - 외부적 충격 z 가 낮을 때, k' 은 증가하는 경향
 - 외부적 충격 z 가 높을 때, k' 은 감소하는 경향
 - 이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부정적 경제 상황이 긍정적 경제 상황으로 또는 긍정적 경제 상황이 부정적 경제 상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이해 가능

-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을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 b' 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압박에 처해 자신의 자산을 싸게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 커짐
 -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가 높을수록 증가
 - 따라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전보다 부채를 줄이려는 유인을 가짐

-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을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비율 b'/k' 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부채를 줄이려 하기 때문

-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을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이윤의 기대값 $EP(k', b', z)$ 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임
 - 외부적 충격 z 가 낮을 때, $EP(k', b', z)$ 은 증가하는 경향
 - 외부적 충격 z 가 높을 때, $EP(k', b', z)$ 은 감소하는 경향
 -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부정적 경제 상황이 긍정적 경제 상황으로 또는 긍정적 경제 상황이 부정적 경제 상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

-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을 때 거둬들이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세수의 기댓값 $TR(k', b', z)$ 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임
 - 외부적 충격 z 가 낮을 때, $TR(k', b', z)$ 은 증가하는 경향

- 외부적 충격 z 가 높을 때, $TR(k', b', z)$ 은 감소하는 경향
-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EP(k', b', z)$ 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 가능

□ <표 IV-13>은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을 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의 효과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줌

-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의 효과는 $\tau_V=18.8\%$ 에서 $\tau_V=0.0\%$ 로 변화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량, 부채, 부채비중, 경제적 이윤, 세수 등의 변화율로 측정
-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량 k' 에 미치는 효과는 $\tau_V=18.8\%$ 일 때의 자본량 k'_1 과 $\tau_V=0.0\%$ 일 때의 자본량 k'_2 의 차

$$\left| \frac{\Delta k'}{k'} \right| = \left| \frac{k'_1 - k'_2}{k'_1} \right| \text{로 측정}$$

<표 IV-13> σ 의 변화($\sigma=0.25 \rightarrow 0.30$)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 효과

z	$\left \frac{\Delta k'}{k'} \right $	$\left \frac{\Delta b'}{b'} \right $	$\left \frac{\Delta(b'/k')}{b'/k'} \right $	$\left \frac{\Delta EP(k', b', z)}{EP(k', b', z)} \right $	$\left \frac{\Delta TR(k', b', z)}{TR(k', b', z)} \right $
0.4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0.5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0.6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0.7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0.8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0.9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1.0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1.1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1.2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1.3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1.4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1.5	감소	감소	증가	감소	감소
1.6	감소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자료: 저자 작성

-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이 외국인투자자의 자본량을 증가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Delta k'/k'|$)은 감소함
 -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비용을 낮추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함
 -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대 투자수익은 낮아지므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감면이 투자의 증가에 미치는 효과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이 외국인투자자의 부채에 미치는 영향($|\Delta b'/b'|$)은 감소하는 경향
 -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를 증가시킴
 - 불확실성의 증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압박 가능성을 높여 부채의 증가를 상대적으로 크게 억제하는 역할을 함

-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이 외국인투자자의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Delta(b'/k')/(b'/k')|$)은 증가하는 경향
 - 이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감면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안전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그 효과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이윤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Delta EP(k',b',z)/EP(k',b',z)|$)은 감소함
 -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이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이윤의 기댓값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감면효과는 더 적게 나타날 것임

-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Delta TR(k',b',z)/TR(k',b',z)|$)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임
 - 외부적 충격 z 가 낮은 구간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은 $TR(k',b',z)$ 을 감소시키며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그 효과성이 증가함

- 외부적 충격 z 가 높은 구간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이 $TR(k', b', z)$ 을 증가시키며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그 효과성이 감소함

라. 소결

- 모의실험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제도는 해당 기업의 자본량과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음
 -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제도가 기업의 자본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제도는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선택에 있어 부채비율을 하락시킬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구입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의 부채 선택에 미치는 영향보다 자본량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 기업의 부채비율은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관련을 갖는 만큼,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제도는 해당 기업의 경제적 이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이는 해당 감면제도가 기업의 자본재 구입비용을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에서 기인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제도 시행 전후 해당 기업으로부터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제도는 해당 기업으로부터의 부가가치세 및 관세 수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세 수입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침
 -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이 이로 인한 세수 감소보다 해당 기업의 이윤 증가를 통해 법인세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및 관세 세율이 주어진 상황에서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는 외국
인투자기업의 행태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침
 - 불확실성의 증가는 경제여건이 나쁠 때는 경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 기
업은 자본량을 증가시키고, 경제여건이 좋을 때는 경제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
증가로 기업은 자본량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임
 - 불확실성의 증가는 기업이 자금압박에 처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채와 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
 - 불확실성의 증가는 경제여건이 나쁠 때는 경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의 증가로
기업의 기대 이윤과 세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제여건이 좋을 때는 경제
후퇴에 대한 가능성의 증가로 기업의 기대 이윤과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행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의
효과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대수익이 하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 제도가 외국
인투자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는 효과의 크기는 감소함
 -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 제도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를 줄이는 효과의 크기
는 감소함
 -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 제도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재
무건전성을 개선하는 효과의 크기는 증가함
 -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 제도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증가시키는
효과 크기는 감소함
 -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의 세수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의 효과성
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여기서의 분석 결과는 특정한 모형과 모수에 대한 가정 아래 도출된 것으로 구
체적 수치에서 현실적 의미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정성적(qualitative) 결과들은 현실에서 부가가치세 및 관세감면이 외국
인투자기업의 행태나 세수 등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시사
점을 제시함
 - 특히 경제의 불확실성의 크기에 따라 그 영향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한 함의를 지님

2. 감면자료를 이용한 효과분석

가. 분석자료

- 분석을 위해 관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와 KISVALUE의 기업 재무자료 이용
 - 기업이 외국인투자를 진행하고 관세 및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내용과 감면금액은 관세청에 기록됨
 - 감면받은 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2010~2020년, 11년 동안의 자료를 제공받았음
 - 조세감면의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KISVALUE에서 제공된 자료의 시기와 상응하는 기간에 대한 기업 재무자료를 추출하여 결합하였음

1) 관세청 자료

- 11년간 관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은 자본재도입 신고 건수는 총 7,579건
 - 기업별로 집계(aggregate)한 결과 148개의 기업이 존재하였음
 - 148개의 기업이 매년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7,579건의 자료를 연도 및 기업별로 집계하여 373개의 관측치를 얻었음
 - 기업당 평균 21건의 관세 등의 면제를 받았으며, 1년에 최대 548건의 면제 혜택을 받았음

2) KISVALUE 자료

- 2010~2020년 사이에 KISVALUE에는 전체 29만 6,678개의 관측치가 존재하였음
 - 상장기업에 해당하는 관측치는 1만 9,820개, 비상장기업에 해당하는 관측치는 27만 6,858개
- KISVALUE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재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였음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과 같은 회사에 대한 자료는 담겨 있지 않아 관세 등에 대한 면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석에 포함할 수 없음
- 그러나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의 재무정보를 수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3) 관세청 자료와 KISVALUE 자료 병합

- 관세청 자료와 KISVALUE 자료를 병합한 결과 148개의 기업 중 88개의 기업이 병합에 성공하였고, 60개 기업은 불일치하여 관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은 기업 중 약 60%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음
 - KISVALUE 자료가 기업 및 연도별로 제공되기 때문에 관세청 자료를 기업과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병합하였음
 - 본 연구의 결과는 자본재도입에 따른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은 기업 중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한정된 것임
 -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결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런데 만일 외부감사 여부가 자본재도입에 따른 관세 등의 면제 혜택 수혜 여부와 체계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면 표본 선택에 따른 편의(selection 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표 IV-14> 자료의 관측치 및 기업 수 현황(2010~2020년)

(단위: 개)

구분	관측치	기업 수
KISVALUE(전체)	296,814	30,716
KISVALUE(상장기업)	19,820	2,370
관세청+KISVALUE 병합 성공	237	88
관세청+KISVALUE 병합 실패	136	60

자료: 관세청, KISVALUE

- 관세 등을 면제받은 기업 중 대다수는 비상장기업
 - 88개의 기업 중 2개 기업이 상장기업, 86개의 기업은 비상장기업이었음

-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은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며, 자본재도입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크지 않아 비상장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임

〈표 IV-15〉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 여부에 따른 상장·비상장 기업 현황

(단위: 개)

구분	비상장기업	상장기업	합계
관세 등 감면받음	86	2	88
관세 등 감면받지 못함	28,260	2,368	30,628
합계	28,346	2,370	30,716

자료: 관세청, KISVALUE

-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이 38개, 대기업이 50개로, 세제혜택이 비교적 고르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은 상장기업 2개는 대기업이었음

〈표 IV-16〉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 여부에 따른 기업규모 현황

(단위: 개)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관세 등 감면받음	38	50	88
관세 등 감면받지 못함	25,642	4,986	30,628
합계	25,680	5,036	30,716

자료: 관세청, KISVALUE

나. 기초통계

- 극단값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하위 1%의 관측치 삭제
 - 매출액 증가율 최솟값이 -89만 4,921.60이고 최댓값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상위 1%와 하위 1%의 관측치를 제거하였음
 - 부채비율 또한 최솟값과 최댓값이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위 1%와 하위 1%의 관측치를 제거하였음
 - 더불어 종업원 1인당 인건비가 음수인 기업을 제거하였음

- 관세청 자료와 KISVALUE 자료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었거나 부채비율이 음수인 기업을 제거하였음

<표 IV-17> KISVALUE에 공시된 모든 기업의 기초통계량

(단위: %)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유형자산 ¹⁾	492	7,622	-104	861,669
매출액 증가율	28,537.49	11,100,000	-894,921.60	5,190,000,000
부채비율	1,438,508	162,000,000	0.01	42,300,000,000
자산 총계 ¹⁾	2,676.19	48,867.32	0.00	3,967,167
종업원 1인당 인건비 ²⁾	80.03	233.35	-19.60	23,256.85

주: 1) 억원 단위

2) 백만원 단위

자료: 관세청, KISVALUE

□ <표 IV-18>은 분석에 이용한 전체 기업의 기초통계

- 평균 유형자산은 429억원, 자산 총계는 2,300억원이며, 부채비율은 479%로 상당히 높은 수준
- 매출액이 급감한 기업과 급등한 기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40%이고, 평균 매출액은 1천억원
- 평균 종업원 수는 143명이며, 종업원 1인당 7,70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었음
- 기업존속년수는 19년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수명인 15년보다 긴 수준

<표 IV-18> 전체 기업의 기초통계(2010~2020년)

(단위: 명, %)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유형자산 ¹⁾	429.00	6,558.30	-0.79	594,385.70
매출액 증가율	39.20	92.81	-93.22	1,256.36
부채비율	479.34	881.67	1.96	9,146.50
자산 총계 ¹⁾	2,283.59	43,071.12	0.00	2,944,443.00
종업원 수	143.93	1,013.33	1.00	98,924.73
종업원 1인당 인건비 ²⁾	76.86	189.80	0.01	6,960.00
매출액 ¹⁾	1,056.79	12,347.09	-30.95	1,448,184.00
기업존속년수(년)	19.20	12.84	0.00	124.00
표본 수(개)	30,704			

주: 1) 억원 단위

2) 백만원 단위

자료: 관세청, KISVALUE

- <표 IV-19>는 관세 등을 감면받은 기업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음
 - 관세 등을 감면 받은 기업의 11년간 관세감면금액은 평균 16억원, 최대 190억원
 - 그중 관세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7억원,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8억원
 - 관세를 감면받은 기업 중 80%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받았음
 - 자산 총계는 4천억원, 유형자산은 2천억원으로, 자산의 50% 이상이 유형자산이었음
 - 관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본재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표 IV-18>보다 자산 총계도 2배 가량 많고, 유형자산은 5배 이상 더 많음
 - 유형자산을 많이 보유하여 자산 총계도 늘어난 것으로 보임
 - 평균 부채비율은 172%로, 여타 기업의 1/3 수준
 -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77%, 평균 매출액은 2,800억원으로, 여타 기업의 2배 수준
 - 평균 종업원 수는 366명으로 여타 기업에 비해 많은 편이나 종업원 1인당 인건비는 6,800만원으로 약 800만원 가량 낮은 수준
 - 기업존속년수는 14년으로 나타남

<표 IV-19> 자본재 관세 등을 감면받은 기업의 기초통계(2010~2020년)

(단위: 명, 개, %)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세 등 감면금액 ¹⁾	15.56	28.32	0.00	190.31
관세감면금액 ¹⁾	7.09	14.27	0.00	95.02
부가세면세금액 ¹⁾	8.47	16.86	0.00	117.59
유형자산 ¹⁾	2,208.20	3,168.04	3.74	14,720.26
매출액 증가율	77.32	135.28	-45.06	655.77
부채비율	171.53	320.71	2.42	2,623.76
자산 총계 ¹⁾	4,152.09	6,238.22	34.05	36,774.77
종업원 수	366.48	751.49	8.00	5,650.00
종업원 1인당 인건비 ²⁾	68.61	24.04	39.83	129.12
매출액 ¹⁾	2,830.33	4,731.62	0.07	21,968.20
기업존속년수(년)	14.34	13.30	2.00	51.00
표본 수(개)	85			

주: 1) 억원 단위

2) 백만원 단위

자료: 관세청, KISVALUE

- <표 IV-20>은 2010~2020년 사이에 관세를 감면받은 기간을 보여줌
 - 평균적으로 2.7년 동안 관세를 감면받고 있었으며, 가장 많이 감면받은 기업은 8년 동안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남
 - 감면기간이 6년인 기업이 1개, 8년인 기업이 2개
 - 최대 감면기간은 5년이나, 분석기간 중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었다가 다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진입하는 경우 다시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기간이 5년 이상인 기업이 나타남
 - 해당 기업들은 업력이 10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해에는 벗어났다가 다시 감면받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서 약 2.6%의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다시 벗어나거나, 기준을 만족해서 다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양상을 보임

<표 IV-20> 자본재 관세 등을 감면받은 기간

(단위: 개)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기업 수	26	22	14	12	11	1	0	2

자료: 관세청, KISVALUE

다. 분석방법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조세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주요 이유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것인 만큼, 관세 등의 감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음
 - 감면 대상 투자가 자본재이고, 해당 자본재는 재무정보공시에 사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투자는 유형자산 계정과목 정보를 이용하였음
 - 그런데 인정되는 자본재의 범위에 토지 및 건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형자산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였음
 - 더불어 극단값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형자산이 0인 기업도 고려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에 1을 더하여 로그를 취하였음

- 변수에 로그를 취한 분석은 결국 증가율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것이므로, 그 연장선에서 고용에 대한 분석도 종업원 수 증가율 변수를 이용하였음
- KISVALUE에서 각 기업의 종업원 수 증가율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자료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였음

- 분석에 이용한 자료가 패널자료인 만큼 패널분석모형인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FE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RE Model)을 이용하였음
 - 구체적인 추정식은 아래와 같음

$$y_{it} = \beta_0 + \beta_1 Z_{it} + X_{it}\gamma + \theta_t + \mu_i + \epsilon_{it}$$

- y_{it} 는 종속변수로, 유형자산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뒤 로그를 취한 변수와 종업원 수 증가율을 나타냄
- Z_{it} 는 주요 독립변수로, 관세 등의 면제를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관세 등 감면금액에 로그를 취한 변수임
 - 기업 i 가 t 기에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은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포함하였음
 - 관세 등 감면금액의 경우 기업 i 의 t 기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금액을 의미하며, 관세 등 감면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의 값을 주고, 로그를 취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 감면금액에 1을 더하였음
 - 관세 등 감면금액을 주요 독립변수로 하는 분석의 경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에 로그를 취하였으므로 β_1 은 탄력성을 의미함
- X_{it} 는 기업 i 의 t 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를 포함하는 벡터로, 매출액 증가율, 부채비율, 로그를 취한 자산 총계, 로그를 취한 종업원 1인당 인건비, 기업존속년수, 대기업 더미, 상장기업 더미 등을 포함하였음
 - 상장기업 더미는 기업 i 가 t 기에 KOSPI나 KOSDAQ에 상장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게 됨
 - 대기업 더미변수는 KISVALUE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2020년 기준 기업 i 가 대기업이면 1의 값을 갖게 됨

- θ_i 는 개별 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간 고정효과를 의미하고, μ_i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업 i 의 고유한 특성이며, ϵ_{it} 는 시간과 기업에 따라 변화하는 순수한 오차항
- 패널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업 i 의 특성인 μ_i 와 설명변수인 Z_{it} , X_{it} 의 상관관계를 허용하는지에 따라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나뉨
 -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경우 고정효과모형, 허용하지 않는 경우 확률효과모형 적용
 -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기업 i 의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의 평균을 빼는 과정이 추정식에 포함되므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이 제거됨
 - 그러나 확률효과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업의 고유한 특성이 추정식에 계속 남아 있게 되어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설명변수와 μ_i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이 필요함
 - 두 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선택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각각 추정한 뒤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여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였음
 - 하우스만 검정 결과 모든 분석에서 고정효과모형이 일치성과 효율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의 결과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음

1) 투자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본재도입을 통한 외국인투자 증진이 목적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 증가율 변수를 투자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음
 - 면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본재의 범위는 기계 및 기계의 부분품, 원재료, 가축, 종자 등임
 - 해당 자본재는 KISVALUE에서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며, 유형자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 및 토지는 면제 대상 자본재가 아니기 때문에 유형자산에서 건물과 토지는 제외하였음

- 게다가 유형자산 증가율은 기계장치 등 구체적 형태를 갖는 고정자산이 당해 연도에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증가율 변수를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 동향 및 성장잠재력을 유추해볼 수 있음
- 설명변수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매출액 증가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부채비율, 자산 총계 등 다양한 재무변수를 고려하였음¹⁶⁾
 -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변동한다는 것은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여 기업이 생산하는 총량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총생산물 변화에 따른 설비투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임
 - 기업은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설비투자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따라 타인자본 조달의 용이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고려하였음
 - 투자의 규모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해당 투자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어 기업의 규모에 대한 대리변수로 자산 총계에 로그를 취한 값을 변수로 활용하였음
 - 이 외에도 자본조달비용, 경영전략, 법인세 및 세제 혜택의 차이 등을 통제하기 위해 대기업 더미변수, 상장기업 더미변수, 기업존속년수를 추가하였음
 - 더불어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만큼 연도에 따라 다른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산업에 따라 다른 투자행태를 보일 수 있어 중분류 기준 산업더미변수를 고려하였음

2)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기업의 자본재 투자를 증가시키면 해당 자본재의 증가가 산출량의 증가로 이어져 고용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

16) 설원식(2005), 이태정 외(2006), 이태정(2007), 홍효석·최학삼(2007), 김우철(2007), 구재운(2008), 심충진·이준규(2011), 강병구(2012), 김동훈(2015), 김진희(2017) 등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선행연구 참조

- 자본재도입에 대한 조세감면이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투자 촉진으로 인한 산출량 증가로 고용을 간접적으로 창출할 수 있음
 -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로 자본이 증가하면 자본과 보완요소로 알려져 있는 숙련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자본과 대체요소로 여겨지는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은 줄어들 것임
 - 그러므로 숙련 근로자의 고용 증가,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 감소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용의 증감이 달라질 수 있음
 - KISVALUE에서 숙련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를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 기업의 대표이사과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원 수(종업원 수)의 증가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음
 - 종업원 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두 효과의 크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음
- 통제변수로 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종업원 1인당 인건비 증가율, 대기업 더미, 상장기업 더미, 기업존속년수 등을 고려하였음¹⁷⁾
- 매출의 증가는 생산량의 증가를 불러오므로 이로 인한 종업원 수 증가가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임
 - 유형자산의 증가는 설비투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비투자의 증가는 매출 증가로 인한 생산량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므로 종업원을 더 많이 고용할 것임
 - 종업원 1인당 인건비는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종업원수 증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의 경우 소비자도 해당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람도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능력이 좋은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할 유인이 있음
 - 오래된 기업일수록 생산요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기업존속년수를 통제변수에 추가하였음

17) 김현숙(2004), 남재량 외(2009), 성효용(2012), 조경엽·오태연(2012), 김학수(2013), 최병호 외(2012) 등 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선행연구 참조

라. 전체 표본분석 결과

1) 관세 등의 감면 여부에 따른 분석

- <표 IV-21>은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것이며,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은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음
 - 고정효과모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종속변수가 로그를 취한 변수이므로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은 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28%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분석에 이용한 기업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한 평균 유형자산이 328억원임을 고려하면, 관세 등 면제로 인해 약 92억원의 추가적인 투자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IV-21>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2010~2020년)

구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관세 등 감면더미	0.28** (0.11)	0.36*** (0.11)
매출액 증가율	0.00002 (0.00003)	0.00002 (0.00003)
부채비율	0.00001 (0.00)	0.00002*** (0.00)
ln(자산 총계)	1.01*** (0.01)	0.99*** (0.01)
대기업더미	- -	0.23*** (0.03)
상장기업더미	0.10*** (0.03)	0.12*** (0.02)
기업존속년수	-0.03*** (0.001)	-0.01*** (0.001)
관측치 수(개)	158,115	158,115
기업 수(개)	21,052	21,052

주: 1. 중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관세청, KISVALUE

- <표 IV-22>는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제혜택은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로 투자는 증가했지만 고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자본의 증가로 인한 고용의 대체효과와 보완효과가 동시에 작용하여 고용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투자의 증가로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자본과 보완요소인 숙련 근로자와 대체요소인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이 달라지게 됨
 - 따라서 엄밀한 고용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저숙련 근로자와 숙련 근로자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분석에 이용한 자료에서 저숙련 근로자와 숙련 근로자를 구분할 수 없어서 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른 분석은 진행할 수 없었음

<표 IV-22>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2010~2020년)

구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관세 등 감면더미	5.86 (39.34)	13.43 (33.91)
매출액 증가율	0.15*** (0.01)	0.15*** (0.01)
ln(유형자산 총계)	1.60 (1.05)	-0.71 (0.71)
ln(종업원 1인당 인건비)	-110.1*** (2.58)	-74.65*** (2.02)
대기업더미	- -	14.77*** (4.26)
상장기업더미	-4.36 (8.12)	13.46*** (4.65)
기업존속년수	2.99*** (0.81)	-0.68*** (0.14)
관측치 수(개)	57,662	57,662
기업 수(개)	13,603	13,603

주: 1. 중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관세청, KISVALUE

- 정재호 외(2016)의 연구와 중복되는 기간(2010~2015년)이 있어 해당 기간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음
 - 정재호 외(2016)의 분석에서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와 고용을 모두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 것과는 달리 본 분석에서는 투자만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어느 기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함

- <표 IV-23>은 기간별로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
 - 정재호 외(201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확률효과모형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관세 등의 면제는 기업의 투자를 약 3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중복되는 기간 내에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중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한 모형에서는 투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나 나타남
 - 이로 미루어 보아 2015년 이후의 기간에서 변화가 발생하여 고정효과모형에서도 투자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짐작됨

<표 IV-23>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기간별 분석)

구분	2010~2015년		2016~2020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관세 등 감면더미	0.20 (0.16)	0.33** (0.16)	0.0831 (0.232)	0.283 (0.225)
매출액 증가율	-0.00002 (0.00004)	0.00 (0.00)	-0.0001** (0.00006)	-0.000204*** (6.00e-05)
부채비율	0.00 (0.00)	0.00 (0.00)	-0.00002* (0.00001)	-0.00001 (0.00001)
ln(자산 총계)	0.99*** (0.01)	0.97*** (0.01)	0.945*** (0.0205)	0.885*** (0.0141)
대기업더미	- -	0.21*** (0.03)	- -	0.345*** (0.0519)
상장기업더미	0.05 (0.04)	0.09*** (0.03)	0.202*** (0.0615)	0.201*** (0.0450)
기업존속년수	-0.02*** (0.002)	-0.01*** (0.001)	-0.0261*** (0.00433)	0.00703*** (0.00137)
관측치 수(개)	81,904	81,904	76,746	76,746
기업 수(개)	17,157	17,157	20,520	20,520

주: 1. 중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관세청, KISVALUE

- <표 IV-24>는 중복되는 기간 사이에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임
 - 본 분석과 마찬가지로 관세 등의 면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표 IV-23>의 결과를 통해 관세 등의 면제로 인한 고용의 증가는 2005~2009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2010년부터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음

<표 IV-24>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기간별 분석)

구분	2010~2015년		2016~2020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관세 등 감면더미	1.89 (44.40)	11.72 (33.71)	-13.44 (127.8)	15.03 (72.79)
매출액 증가율	0.14*** (0.01)	0.15*** (0.01)	0.152*** (0.0295)	0.158*** (0.0216)
ln(유형자산 총계)	3.84*** (1.46)	-1.06 (0.76)	-2.851 (2.932)	-1.695* (1.028)
ln(종업원 1인당 인건비)	-138.7*** (3.04)	-76.26*** (2.10)	-147.4*** (6.589)	-44.82*** (3.247)
대기업더미	- -	18.73*** (3.90)	- -	6.476 (4.847)
상장기업더미	-7.54 (13.58)	1.40 (5.02)	6.375 (20.99)	23.54*** (5.633)
기업존속년수	6.10*** (0.60)	-0.47*** (0.13)	-0.0880 (2.661)	-0.733*** (0.150)
관측치 수(개)	32,413	32,413	25,249	25,249
기업 수(개)	10,778	10,778	10,048	10,048

주: 1. 중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관세청, KISVALUE

2) 관세 등의 감면금액에 따른 분석

- 관세 등의 감면 여부와 더불어 감면금액에 따라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감면금액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분석을 진행하였음

- 종속변수가 로그를 취한 변수와 증가율 변수이므로 관세감면금액에도 로그를 취하였음
-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가 로그를 취한 변수, 즉 증가율 변수이므로 회귀계수를 탄력성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표 IV-25>는 전체 분석기간인 2010~2020년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금액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것임

- 건물,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관세감면금액에 대한 탄력성은 0.02로 나타남
- 이는 곧 관세감면금액이 1% 증가할 때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 총액이 0.02%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 분석기간 동안 관세 등을 감면받은 기업의 평균 관세 등 감면금액이 16억원이고, 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평균 유형자산이 2천억원임을 고려하면, 관세감면금액이 1,600만원 증가하면 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이 4천만원 증가하는 것임

<표 IV-25>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2010~2020년)

구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ln(관세 등 감면금액)	0.02** (0.01)	0.02** (0.01)
매출액 증가율	-0.0002*** (0.00004)	-0.0002*** (0.00004)
부채비율	-0.00003*** (0.000007)	-0.00003*** (0.000007)
ln(자산 총계)	1.03*** (0.01)	0.99*** (0.01)
대기업더미	- -	0.14*** (0.05)
상장기업더미	0.06** (0.03)	0.07** (0.03)
기업존속년수	-0.03*** (0.002)	0.005*** (0.001)
관측치 수(개)	158,899	158,899
기업 수(개)	21,220	21,220

주: 1. 중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관세청, KISVALUE

- <표 IV-26>에서는 전체 분석기간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
 - 관세 등의 감면 여부에 따른 분석을 진행한 <표 IV-22>와 동일하게 고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를 보임
 - 금액과 감면 여부 모두 고용증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임

<표 IV-26>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2010~2020년)

구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ln(관세 등 감면금액)	0.28 (2.11)	0.70 (1.80)
매출액 증가율	0.15*** (0.01)	0.15*** (0.01)
ln(유형자산 총계)	1.60 (1.05)	-0.71 (0.71)
ln(종업원 1인당 인건비)	-110.1*** (2.58)	-74.65*** (2.02)
대기업더미	- -	14.77*** (4.26)
상장기업더미	-4.36 (8.12)	13.46*** (4.65)
기업존속년수	2.99*** (0.81)	-0.68*** (0.14)
관측치 수(개)	57,662	57,662
기업 수(개)	13,603	13,603

주: 1. 중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관세청, KISVALUE

- 감면 여부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정재호 외 (2016)의 연구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음
- <표 IV-27>은 기간별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것임
 - 관세 등의 면제 여부와 유사하게 2010~2015년 사이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확률효과 모형이 유의한 결과를 보임

- 이 결과로 미루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관세감면금액보다는 감면 여부가 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16~2020년만을 분석한 결과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중복되는 기간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회귀계수의 크기가 다름
- 해당 기간 중 평균 조세감면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로 인해 분석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보임

<표 IV-27>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기간별 분석)

구분	2010~2015년		2016~2020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ln(관세 등 감면금액)	0.01 (0.01)	0.02* (0.01)	0.004 (0.01)	0.01 (0.01)
매출액 증가율	-0.0002*** (0.00005)	-0.0002*** (0.00005)	-0.0001** (0.00)	-0.0002*** (0.00)
부채비율	-0.00002** (0.00)	-0.00003*** (0.00)	-0.00002* (0.00)	-0.00001 (0.00)
ln(자산 총계)	1.03*** (0.01)	0.99*** (0.01)	0.95*** (0.02)	0.89*** (0.01)
대기업더미	- -	0.12*** (0.04)	- -	0.35*** (0.05)
상장기업더미	0.03 (0.05)	0.04 (0.04)	0.20*** (0.06)	0.20*** (0.05)
기업존속년수	-0.03*** (0.002)	-0.00005 (0.001)	-0.026*** (0.004)	0.01*** (0.001)
관측치 수(개)	82,153	82,153	76,746	76,746
기업 수(개)	17,234	17,234	20,520	20,520

주: 1. 중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관세청, KISVALUE

□ <표 IV-28>은 기간별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여타 결과와 마찬가지로 관세 등의 면제금액은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해당 분석 결과는 저숙련 근로자와 숙련 근로자를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의 자본에 대한 대체효과와 보완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표 IV-28>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기간별 분석)

구분	2010~2015년		2016~2020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ln(관세감면금액)	0.07 (2.38)	0.60 (1.80)	-0.673 (8.038)	0.878 (3.950)
매출액 증가율	0.14*** (0.01)	0.15*** (0.01)	0.152*** (0.0295)	0.158*** (0.0216)
ln(유형자산 총계)	3.84*** (1.46)	-1.06 (0.76)	-2.851 (2.932)	-1.695* (1.028)
ln(종업원 1인당 인건비)	-138.7*** (3.04)	-76.26*** (2.10)	-147.4*** (6.589)	-44.82*** (3.247)
대기업더미	- -	18.73*** (3.90)	- -	6.475 (4.847)
상장기업더미	-7.54 (13.58)	1.40 (5.02)	6.375 (20.99)	23.54*** (5.633)
기업존속년수	6.10*** (0.60)	-0.47*** (0.13)	-0.0888 (2.661)	-0.733*** (0.150)
관측치 수(개)	32,413	32,413	25,249	25,249
기업 수(개)	10,778	10,778	10,048	10,048

주: 1. 중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관세청, KISVALUE

마. 외국인투자기업 분석 결과

- 과연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외국인투자기업군에
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가로 분석을 진행하였음
 - 관세 등의 감면 대상이 아닌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본 제도가
존재하는지 모를 가능성도 있음
 - 만일 본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아님
을 알면 투자 및 고용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본 제도가 기업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
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필요함

□ KISVALUE에서 각 연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의 명부를 제공하여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구분하였음

1) 관세 등의 감면 여부에 따른 분석

□ <표 IV-29>는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것이며, <표 IV-21>과 마찬가지로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은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음
- 고정효과모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종속변수가 로그를 취한 변수이므로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은 기업의 투자가 27%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형자산에서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한 평균 금액이 686억원 임을 고려하면, 관세 등 면제로 인해 약 185억원(=686억원×27%)의 추가적인 투자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IV-29>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2010~2020년)

구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관세 등 감면더미	0.27** (0.11)	0.30*** (0.11)
매출액 증가율	0.00009 (0.0001)	0.0001 (0.0001)
부채비율	0.00002 (0.00)	0.00003 (0.00)
ln(자산 총계)	0.93*** (0.03)	0.97*** (0.03)
대기업더미	- -	0.46*** (0.13)
상장기업더미	-0.12 (0.08)	-0.15** (0.07)
기업존속년수	-0.02*** (0.005)	-0.003 (0.004)
관측치 수(개)	10,967	10,967
기업 수(개)	1,625	1,625

주: 1. 중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관세청, KISVALUE

□ <표 IV-30>은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 IV-22>와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은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표 IV-22>와 동일한 해석을 할 수 있음

- 투자의 증가로 자본과 보완재인 숙련 근로자의 고용 증가와 대체재인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 감소가 동시에 발생
- 두 효과의 크기가 유사하여 종업원 수 증가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IV-30>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2010~2020년)

구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관세 등 감면더미	7.72 (27.46)	8.64 (18.14)
매출액 증가율	0.06* (0.03)	0.07*** (0.03)
ln(유형자산 총계)	4.40 (3.22)	-0.79 (1.14)
ln(종업원 1인당 인건비)	-66.18*** (7.40)	-30.54*** (3.77)
대기업더미	- -	7.09* (4.17)
상장기업더미	-2.12 (17.19)	1.10 (5.24)
기업존속년수	-0.04 (1.50)	-0.36** (0.15)
관측치 수(개)	4,676	4,676
기업 수(개)	1,123	1,123

주: 1. 중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관세청, KISVALUE

□ 정재호 외(2016)의 연구와 중복되는 기간(2010~2015년)에 해당하는 분석을 동일하게 진행

□ <표 IV-31>과 <표 IV-32>는 기간별 사이에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

- 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는 달리 2010~2015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에 관세 등의 면제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표본분석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기업에서도 관세 등의 면제가 고용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기간이 늘어나면 추정의 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표본 증가로 인한 효율성의 증가로 유의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임

<표 IV-31>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기간별 분석)

구분	2010~2015년		2016~2020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관세 등 감면터미	0.17 (0.15)	0.21 (0.14)	0.13 (0.19)	0.19 (0.19)
매출액 증가율	0.0002* (0.0001)	0.0003* (0.0001)	-0.0003 (0.0002)	-0.0003 (0.0002)
부채비율	-0.000006 (0.00003)	0.0000005 (0.00003)	0.00002 (0.00005)	0.00005 (0.00005)
ln(자산 총계)	0.83*** (0.04)	0.88*** (0.03)	0.85*** (0.07)	1.01*** (0.04)
대기업터미	- -	0.62*** (0.13)	- -	0.46*** (0.15)
상장기업터미	0.01 (0.12)	-0.03 (0.09)	0.06 (0.16)	-0.18 (0.12)
기업존속년수	-0.003 (0.006)	-0.00005 (0.005)	-0.02 (0.01)	-0.002 (0.005)
관측치 수(개)	5,923	5,923	5,044	5,044
기업 수(개)	1,336	1,336	1,345	1,345

주: 1. 중분류산업터미와 연도터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관세청, KISVALUE

<표 IV-32>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기간별 분석)

구분	2010~2015년		2016~2020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관세 등 감면더미	4.046 (43.21)	8.046 (24.29)	-12.28 (54.56)	1.39 (25.32)
매출액 증가율	0.0524 (0.0522)	0.0978** (0.0386)	0.003 (0.05)	0.02 (0.03)
ln(유형자산 총계)	6.972 (6.287)	-4.068** (1.582)	0.54 (4.80)	2.73** (1.38)
ln(종업원 1인당 인건비)	-93.65*** (12.27)	-28.44*** (5.078)	-71.59*** (10.69)	-22.52*** (4.86)
대기업더미	- -	13.00** (5.577)	- -	-0.53 (5.03)
상장기업더미	-4.779 (33.96)	7.908 (7.471)	-1.79 (36.72)	-5.42 (6.13)
기업존속년수	0.688 (1.988)	-0.413* (0.215)	-0.36 (2.96)	-0.21 (0.17)
관측치 수(개)	2,674	2,674	2,002	2,002
기업 수(개)	894	894	739	739

주: 1. 중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관세청, KISVALUE

2) 관세 등의 감면금액에 따른 분석

- 관세 등의 감면 여부와 더불어 감면금액에 따라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감면금액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분석을 진행하였음
- <표 III-33>은 전체 분석기간인 2010~2020년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금액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것임
 - 건물,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관세감면금액에 대한 탄력성은 0.02로 나타남
 - 이는 곧 관세 등의 감면금액이 1% 증가할 때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 총액이 0.02%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 분석기간 동안 관세 등을 감면받은 기업의 평균 관세 등의 감면금액이 16억원 이고, 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평균 유형자산이 2천억임을 고려하면, 관세감면금액이 1,600만원 증가하면 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이 4천만원 증가하는 것임
- 절대 금액만을 비교하면 관세 등 감면금액의 증가는 약 2.5배의 투자 증가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임

<표 IV-33>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2010~2020년)

구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ln(관세 등 감면금액)	0.01** (0.006)	0.02*** (0.006)
매출액 증가율	0.0001 (0.0001)	0.0001 (0.0001)
부채비율	0.00002 (0.00003)	0.00003 (0.00003)
ln(자산 총계)	0.93*** (0.03)	0.97*** (0.03)
대기업더미	- -	0.46*** (0.13)
상장기업더미	-0.12 (0.08)	-0.15** (0.07)
기업존속년수	-0.02*** (0.005)	-0.003 (0.004)
관측치 수(개)	10,967	10,967
기업 수(개)	1,625	1,625

주: 1. 중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관세청, KISVALUE

- <표 IV-34>에서는 전체 분석기간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
 - 관세 등의 감면 여부에 따른 분석을 진행한 <표 IV-22>와 마찬가지로 고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를 보임
 - 금액과 감면 여부 모두 고용 증가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임

<표 IV-34>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2010~2020년)

구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ln(관세 등 감면금액)	0.40 (1.48)	0.43 (0.95)
매출액 증가율	0.06* (0.03)	0.07*** (0.03)
ln(유형자산 총계)	4.40 (3.23)	-0.79 (1.14)
ln(종업원 1인당 인건비)	-66.18*** (7.41)	-30.53*** (3.77)
대기업더미	- -	7.10* (4.17)
상장기업더미	-2.12 (17.19)	1.10 (5.24)
기업존속년수	-0.04 (1.50)	-0.36** (0.15)
관측치 수(개)	4,676	4,676
기업 수(개)	1,123	1,123

주: 1. 중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관세청, KISVALUE

- 감면 여부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정재호 외(2016)의 연구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음
- <표 IV-35>와 <표 IV-36>은 기간별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것임
 - 기간을 나누어 분석한 여타 결과와 마찬가지로 관세 등의 면제금액은 투자와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5>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기간별 분석)

구분	2010~2015년		2016~2020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ln(관세 등 감면금액)	0.01 (0.008)	0.01 (0.01)	0.007 (0.01)	0.01 (0.01)
매출액 증가율	0.0002* (0.0001)	0.0003* (0.0001)	-0.0003 (0.0002)	-0.0003 (0.0002)
부채비율	-0.000006 (0.00002)	0.00 (0.00)	0.00002 (0.00005)	0.00005 (0.00005)
ln(자산 총계)	0.83*** (0.04)	0.88*** (0.03)	0.85*** (0.07)	1.01*** (0.04)
대기업더미	- -	0.62*** (0.13)	- -	0.46*** (0.15)
상장기업더미	0.01 (0.12)	-0.03 (0.09)	0.06 (0.16)	-0.18 (0.12)
기업존속년수	-0.003 (0.01)	-0.00006 (0.005)	-0.02 (0.01)	-0.002 (0.005)
관측치 수(개)	5,923	5,923	5,044	5,044
기업 수(개)	1,336	1,336	1,345	1,345

주: 1. 중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관세청, KISVALUE

<표 IV-36> 자본재 관세 등의 면제금액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기간별 분석)

구분	2010~2015년		2016~2020년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ln(관세 등 감면금액)	0.19 (2.32)	0.41 (1.30)	-0.61 (3.15)	0.11 (1.39)
매출액 증가율	0.05 (0.05)	0.10** (0.04)	0.003 (0.05)	0.02 (0.03)
ln(유형자산 총계)	6.98 (6.29)	-4.07** (1.58)	0.54 (4.80)	2.72** (1.38)
ln(종업원 1인당 인건비)	-93.66*** (12.27)	-28.43*** (5.08)	-71.59*** (10.69)	-22.52*** (4.86)
대기업더미	- -	13.01** (5.58)	- -	-0.52 (5.03)
상장기업더미	-4.78 (33.96)	7.91 (7.47)	-1.80 (36.72)	-5.41 (6.13)
기업존속년수	0.69 (1.99)	-0.41* (0.22)	-0.37 (2.96)	-0.21 (0.17)
관측치 수(개)	2,674	2,674	2,002	2,002
기업 수(개)	894	894	739	739

주: 1. 중분류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2. *** p<0.01, ** p<0.05, * p<0.1

3. () 안은 표준오차

자료: 관세청, KISVALUE

바. 소결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형자산에서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한 평균 금액이 686억 원임을 고려하면, 본 제도로 인해 약 185억원의 추가적인 투자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둘째, 투자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금액에 대한 탄력성은 0.02이며, 관세 등의 면제금액의 증가는 약 2.5배의 투자 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됨
 - 분석기간 동안 관세 등을 감면받은 기업의 평균 감면금액이 16억 원이고, 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평균 유형자산이 2천억 원임을 고려하면 관세 등의 감면금액이 1,600만원 증가할 때 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이 4천만원 증가한 것
 - 셋째,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본 제도의 목적이 외국인 투자, 그중에서도 자본재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V. 결론 및 정책 제언



V.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제도가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음

- 이론적 분석 및 수치적(시뮬레이션) 분석과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따른 관세 등의 감면제도는 감면 혜택을 받은 수혜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론적 분석과 그에 따른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본 제도로 인해 기업의 투자 및 재무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관세감면금액 대비 약 2.5배의 투자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이론적·실증적 분석 결과, 본 감면제도는 추가적인 투자 증가효과가 있어, 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 것으로 평가됨
 - 수혜 대상과 수혜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운용의 적절성도 담보될 수 있으므로 제도 운용 측면의 타당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관세감면제도는 FTA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폐지되어야 할 제도임
 -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가 주로 수입되는 미국, EU, 중국과는 이미 FTA가 체결되어 대부분의 자본재가 무관세(0%)로 수입되고 있음
 - 한·미 FTA와 한·EU FTA의 기계류 협정세율은 이미 무세(0%)이고 한·중 FTA의 협정세율도 무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
 - 일본과의 RCEP이 발효되면 비중이 큰 일본 자본재도입 부담도 감소하기 때문에 향후 감면제도 철폐가 적절함

- RCEP 체결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일본 제품의 품목 수 기준 83%, 수입액 기준 76%에 대해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 따라서 일본 수입품의 관세감면이 적용되면 일본 자본재 관세부담도 감소할 예정임
 - 일본 수입품의 관세감면 중에는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들도 있음
- 따라서 본 관세감면제도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일본과의 RCEP 발효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제안함
- 단기적 유지에는 코로나19와 같은 현재의 부정적인 경제 환경에서 감면제도가 투자 감소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단기적으로 일본과의 RCEP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과의 RCEP 발효 이전 기간 동안에 일본 자본재도입 부담을 감소시켜 투자 증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본 관세감면제도를 단기적으로 운용한다면,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감면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여 운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 본 관세감면제도를 축소할 예정이라는 정책 방향을 시장에 사전에 제시하는 측면이 있음
 - 조만간 일본과의 RCEP이 발효되면, 일본 자본재 수입의 부담이 감소해서 현재 5년인 관세감면 기간이 큰 의미가 없음
 - 현재도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투자가 3년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해도 투자 증가효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 현재 약 80%의 기업이 3년 이내, 90% 기업이 4년 이내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참고문헌

- 강병구, 『조세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평가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12.
- 구재운, 「경영자 재량, 레버리지와 기업투자」,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1호, 2008, pp. 391~409.
- 김동훈, 「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8권 4호, 2015, pp. 1617~1638.
-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 제2호, 2007, pp. 51~97.
- 김진희,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투자효율성이 자산투자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017, pp. 241~258.
- 김학수, 『기업특성과 법인세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김현숙, 「기업의 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포럼』, 2004, pp. 6~30.
- 남재량·전영준·이영·김현숙, 『조세정책과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09.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2020. 11. 15.
- 설원식, 「외국인투자자가 국내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영리뷰』, 제9권 제1호, 2005, pp. 53~68.
- 성효용, 「법인세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재정정책논집』, 제14권 제4호, 2012, pp. 125~142.
- 심충진·이준규,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2권 제2호, 2011, pp. 435~454.
- 이태정·권순창·김형국, 「조세혜택 및 세율인하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 제21권 제4호, 2007, pp. 329~354.
- 이태정, 「기업의 특성변수와 기업투자활동의 관련성 연구」, 『세무회계연구』, 제21권, 2007, pp. 43~59.
- 정재호·송헌재·최기호·조명환,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조경엽·오탈연, 『경제성장과 법인세의 고용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12.
- 조명환, 「법인세제가 기업 투자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정책논집』, 제14권 제1호, 2012, pp. 3~40.
- 최병호·정종필·이근재, 「중업원분 지방소득세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면세점 기준 개선에 대한 함의」,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7권 제2호, 2012, pp. 57~82.
- 홍효석·최학삼, 「기업의 조세부담 및 타인자본비용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48권 제1호, 2007, pp. 371~387.
- 현진권·표학길, 「유형고정자산의 폐기율 및 경제적 감가상각율 추정: 자본스톡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비교」, 『한국경제의 분석』, 제3권 제1호, 1997, pp. 154~193.
- Cooper, R, and Ejarque, J., “Exhuming Q: Market power vs. capital market imperfections,” Working paper 818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1.
- Gomes, J. F., “Financing Invest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1, 2001, pp. 1263~1285.
- Hennessy, C. A. and T. M. Whited, “Debt Dynamics,” *Journal of Finance*, Vol. 60, 2005, pp. 1129~1165.
- Stokey, N. L., Robert E. Lucas, Jr. and Prescott, E. C., *Recursive Methods in Economic Dynamic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 Tauchen, G., “Finite state markov-chain approximations to univariate and vector autoregressions,” *Economics Letters*, Vol. 20, 1986, pp. 177~181.
- Ramey, V. A. and Shapiro, M. D., “Displaced Capital: A Study of Aerospace Plant Closing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9, 2001, pp. 958~992.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_촉진법, 검색일자: 2021. 3. 29.
- _____,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검색일자: 2021. 3. 29.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최종 검색일자: 2021. 6. 21.
-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trade-tariff-end-use-relief-on-goods-used-for-a-prescribed-use/uk-trade-tariff-end-use-relief-on-goods-used-for-a-prescribed-use>, 검색일자: 2021. 4. 7.

- _____,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can-pay-less-duty-if-your-goods-are-imported-into-end-use>, 검색일자: 2021. 4. 7.
- EU, https://ec.europa.eu/info/relations-united-kingdom/eu-uk-trade-and-cooperation-agreement_en, 검색일자: 2021. 4. 7.
- EUR-Lex,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3R2454:%20en:HTML#d1e10776-1-1>, 검색일자: 2021. 4. 19.
- _____,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3R2454:%20en:HTML#d1e112-1-1>, 검색일자: 2021. 4. 7.
- Freight Forwarder Quoteonline, <https://www.freightforwarderquoteonline.com.au/news-freight-forwarding-custom-broker-clearance/enhanced-project-law-scheme-epbs-scrapped-3-may/>, 검색일자: 2021. 4. 7.

